

연구총서2000-13

•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방안

손 기 응

**통 일 연 구 원**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남북한 모두의 포괄적인 국가이익에 부합하여 서로로부터 호응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지도 획득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으로서, 통일 이후에는 통일조국이 동북아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의 유지와 환경보호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한반도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해,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계평화와 지구환경문제의 개선을 위해,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를 민·관·군이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야 할 국가전략사업으로 제안한다.

## I. 현 단계 남북관계 평가와 과제

현 단계 남북관계의 화두는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경제·환경·문화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심화시키는 한편,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남북관계를 명실상부한 평화적 공존단계로 진입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볼 때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에 대한 남북한의 의지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서로가 합의하느냐의 여부에서 확인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무장지대에는 남북한의 이해가 정치·군사·환경·경제·문화 등의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따라서 남북한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합의한다는 사실은 바로 서로가 정치·군사·환경·경제·문화 등 포괄적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평화공존을 실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이 글에서는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가 ① 남북한이 포괄적 측면에서 이해가 합치하여 호응할 수 있는 동시에 주변국 및 국제사회로부터도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으로서 한반도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에 필수적인 사업임을 논거하고, ② 이를 국가적 추진사업으로, 특히 남북대화에서 한반도 화해·협력을 촉진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힘을 실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제안하면서 그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 II.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의의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중무장지역인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구현을 상징하는 유엔기구를 유치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유지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는 남북한의 의지를 과시하는 사업이다. 유엔기구의 비무장지대내 존재는 휴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시에 예상되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의 경우에도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유지를 담보할 수 있다. 나아가 아시아지역 최초로 유엔기구를 유치함으로써 남북한의 정치·외교적 위상을 고양할 수 있으며,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무장지대 평화적 활용의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경제번영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모든 국민이 직면하고 있으며 그 해결에 인류문명의 지속여부가 달려있는, “21C의 화두”인 환경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남북한의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환경보호의 중심국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비무장지대의 환경보호·개선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민간운동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세계 어느 곳보다 국가적 다양성이 높은 동북아지역에서 환경협력을 이끌어내는 촉매적 역할을 할 수 있어 “의제 21”이 강조하고 있는 지역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고 지구환경협력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존재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통일조국의 세계평화유지와 환경보호활동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 Ⅲ.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 추진구도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은 단계적으로, 즉 국내적 준비단계 → 국내외 공감대 형성단계 → 전방위 외교단계 → 실천단계의 순으로, 국내적·국제적·남북관계적 차원이란 중층적 관점에서 추진한다. 이때 각 단계는 단순히 시간적인 축차적 개념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되는 전체의 과정 가운데 시간별 중점분야를 의미한다.

국내적 준비단계에서는 우선 (가칭)「유엔기구유치기획단」을 비공식적 차원에서 구성하여 한반도 화해·협력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평화공존의 관계로 진입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서의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방안”에 대한 전략적 타당성을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유엔기구유치기획단」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을 민·관·군 등 전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전담할 대통령직속기관 형식의 (가칭)「유엔기구유치위원회」를 국내외 인사로 구성하여 공식적

으로 출범시킨다. 이 단계에서 「유엔기구유치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의 이론적 완결, 비무장지대내 적정소재지의 확정, 유치할 유엔환경기구의 확정 등이다.

국내외 공감대 형성단계에서는 「유엔기구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에 대한 합의기반을 대내외적 차원에서 형성·확산시킨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사업의 의의를 국민들에 납득시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규정 정비, 물질적 기반 확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세계 주요 평화 및 환경관련 NGOs에 평화와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의 의의를 홍보하여 국제적 지지여론을 형성하고 이들이 지지성명을 발표하도록 한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북한이 이 사업의 의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전방위 외교단계에서는 사업에 대한 국내적 지지를 확고하게 다지며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 차원에서는 민·관·군이 협심하여 전방위 차원에서 주변국을 포함하는 유엔회원국의 민·관·군에, 그리고 유엔사무국, 각종 유엔기구, 기타 국제기구·단체 등에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의 의의를 홍보하고 이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다. 만약 북한이 이 사업에 호응할 경우에는 남북한이 함께 이러한 노력을 전개한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북한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에 소극적일 경우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지속함과 더불어, 사업에 대한 국내외 NGOs 및 유엔과 국제사회·기구의 지지를 북한이 사업에 호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한다. 북한이 이 사업에 적극적일 경우 남북회담을 통해 사업의 이행을 위한 (가칭)「유엔기구유치남북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한다.

실천단계에서는 국내적, 국제적 공감대와 지지, 그리고 북한의 호응을 바탕으로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의 세부실천방안을 남북한 및 유엔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에서 협의하고 실행한다.

#### IV.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추진방안

##### 가. 유엔환경기구 확정

비무장지대에 어떠한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할 것인가에 관한 국내적 논의는 ① 기존의 환경관련 유엔기구중 그 상설사무소의 소재지를 비무장지대에 이전하는 방안, ② 기존 환경관련 유엔기구들의 기능 가운데 일부를 독립하여 하나 혹은 복수의 상설사무소를 비무장지대에 유치하는 방안, ③ 새로운 유엔환경기구를 비무장지대에 설립하는 방안, ④ 유엔관련 환경협약들 가운데 하나 혹은 복수의 상설사무소를 비무장지대에 유치하는 방안, ⑤ 환경관련 유엔기구의 상설회의소를 비무장지대에 유치하는 방안 등 다섯가지 차원에서 진행된다. 이때 특히 현재 업무의 포화상태에 있으며, 접근성이 어려운 유엔환경계획(UNEP)의 일부 기능을 분리하고 그 상설사무소를 비무장지대내에 유치하는 방안, 즉 두 번째의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나. 유엔환경기구 소재지 확정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는 세계 여러나라의 시민들이 자유로이 만나는 평화의 공간, 화합의 공간, 환경보호를 상징하는 생태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향후 남북한간 인적, 물적 교류의



축매 장소이면서 통일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의 대상지역으로 ① 경의선축상 장단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및 서부평야지대, ② 경원선축상의 철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부 구릉지대 및 중서부 산악지대, ③ 동해해안선축을 중심으로 한 동부 산악 및 동해안지대를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하여 ① 유엔기구의 소재지에 걸맞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염원을 상징할 수 있는 지역성, ② 환경관련 국제기구의 소재지에 걸맞는 주변의 자연환경, ③ 배후 도시로부터의 접근성, ④ 기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활용성, ⑤ 한반도 공간구조를 회복하는 남북연결의 용이성, ⑥ 향후 남북 경제·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입지성, ⑦ 향후 동북아 거점으로 역할할 수 있는 입지성 등을 평가하여 소재지로 선정한다.

#### 다. 대북협상

남북대화를 통해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가 남북한 모두에게 정치·군사·환경·경제·문화 등 복합적 측면에서 상호 이득이 되며, 동시에 국제적으로 남북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족도약의 방안임을 북한이 주지하도록 한다. 다만 북한이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에 호응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현실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과 유엔환경기구의 비무장지대내 유치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설치를 위한 지역의 설정과 시설물의 건설을 위한 주체적 당사자는 경의선 철도와 도로건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이다. 다만 사업이 유엔기구의 유치임을 고려하여 유엔과의 협의도 진행한다.

유엔환경기구 소재지 및 접근로의 건설은 자연환경의 최적 이용과 관련하여 개발과 보존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입각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엔기구유치남북위원회」 산하에 “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조사하여 양국 정부에 상정하는 과정을 밟게 한다.

유엔환경기구 소재지의 개발과 그곳에 이르는 남북 각측으로부터의 통로 개설의 방법은 일체의 군사적, 정치적 문제를 현재의 상태로 존치시킨 가운데 휴전협정 당시에 판문점을 개설하던 방식에 의하여 추진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이 없는 가운데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와 접근로를 제외한 지역의 자국 군사력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남북한 쌍방이 단기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는 우선적으로 환경과 평화를 위한 국제적 사무 및 회의시설의 건설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건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주거시설 건설, 평화시로의 확대 및 개발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고려한다.

한편 소재지의 선정과 개발과정에서 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이 합동으로 (가칭)“비무장지대 트러스트”(DMZ Trust)를 구성하여 소재지 및 접근로의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남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는 남북공동관리위원회 방안이 가장 실천성이 있으며, 효율적이다. 다만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3의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성될 경우에는 휴전협정이 존속하는 한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으로 한정하여 구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유치될 유엔환경기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라. 국제적 추진방안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남북한간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이란 측면에서 4자회담의 양대 의제, 즉 평화체제 전환과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포함된다. 따라서 4자회담에서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제기한다.

유엔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유엔전문기구 또는 유엔산하기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들 기구가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를 남북한에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 다른 한편으로 유엔이나 국제기구의 대규모 대북지원시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를 북한에 권고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세계여론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를 위해 평화 및 환경과 직·간접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국외의 NGOs와 국제민간기구에 대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사업이 정치·군사·환경·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남북간에, 동북아에, 나아가 21세기 신국제질서의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작업에 힘을 쏟아 이들로부터 자발적인 지지선언이나 지지서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목 차 -

I. 현 단계 남북관계 평가와 과제 .....	1
II.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고려사항 .....	6
1. 비무장지대의 성격 .....	6
2.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고려사항 .....	9
가. 정치적 측면 .....	10
나. 군사적 측면 .....	11
다. 환경적 측면 .....	12
라. 경제적 측면 .....	16
마. 문화적 측면 .....	17
바. 국제적 측면 .....	18
III.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의 의의 .....	20
1. 남북한 차원 .....	20
가. 정치적 측면 .....	20
나. 군사적 측면 .....	28
다. 환경적 측면 .....	30
라. 경제적 측면 .....	32
마. 문화적 측면 .....	35
2. 국제적 차원 .....	36

IV.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의 추진방안 .....	41
1. 사업추진구도 .....	41
가. 제1단계: 국내적 준비단계 .....	41
나. 제2단계: 국내외 공감대 형성단계 .....	42
다. 제3단계: 전방위 외교단계 .....	42
라. 제4단계: 실천단계 .....	43
2. 국내적 추진방안 .....	43
가. 「유엔기구유치위원회」 구성 .....	43
나. 유엔환경기구 확정 .....	47
다. 유엔환경기구 소재지 확정 .....	55
3. 대북협상방안 .....	58
가. 협상자세 .....	58
나. 합의 당사자 .....	60
다. 소재지 및 접근로 개발 .....	61
라. 소재지 및 접근로 관리 .....	65
4. 국제적 추진방안 .....	67
V. 결 론 .....	69
참고문헌 .....	72

- 표·그림 목차 -

<표 1> 북한의 유엔산하기구 가입 현황(2000.1 현재) .....	26
<표 2> 동북아의 환경문제 .....	38
<그림 1> 남북관계 진전구도 .....	3
<그림 2> 「유엔기구유치위원회」 기구도표(안) .....	46

## I. 현 단계 남북관계 평가와 과제

최근까지의 남북관계는 남북이 이념,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대결하였던 "적대적 대결"(antagonistische Konfrontation)의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서로간에 체제 비난과 유형적, 무형적인 적대성이 표출되었던 반면, 교류나 협력은 철저히 단절되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포용정책<sup>1)</sup>을 바탕으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이념적으로, 정치·군사적으로는 적대적인 대립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형성되는 "적대적 협력"(antagonistische Kooperation)의 "초입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잠수정의 침투, 서해에서의 무력충돌과 같은 적대적인 대립이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서도 금강산관광사업과 같은 남북한 경제협력이 추진될 뿐만 아니라, 예술단이나 체육·종교단체의 방북이 실현되는 등 사회·문화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적대적 협력이 서로간의 이해에 의해 확대되고 심화될 경우에는 이념적으로는 체제의 성격을 달리하더라도,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부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평화적 공존"의 시대가 남북관계에 도래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이념적으로는 상이하더라도 경제, 사회, 문화분야에서의 상호간 전면적인

---

1) 2000년 12월 4일 발간된 『2000년 국방백서』(서울: 국방부)에서 정부는 좀 더 긍정적인 남북관계를 위해 대북포용정책이란 용어 대신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짐은 물론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도 남북한이 부분적으로 합의하여 당국간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군사적으로도 긴장이 완화되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상황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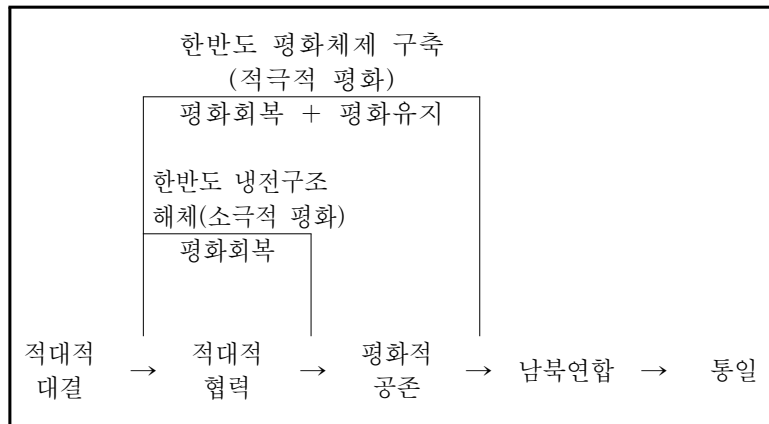
나아가 평화적 공존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남북한 간에 커다란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염원하는 민족통일의 궁극적 형태인 "1민족 1국가 1체제"로 향하는 도정에서 "1민족 1국가 2체제" 형식의 "남북연합"이 가시화되어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이념적으로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기는 하나 대외적으로, 국제무대에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 영역에서 남북한 상호간에 통합의 수준을 서서히 높여가는 가운데 민족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이룩될 수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대는 <그림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sup>2)</sup>

---

2)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진전구도와 남북관계에 국제적 차원이 고려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평화체제 구축은 전쟁상태를 청산하는 "평화의 회복"(소극적 평화)과 평화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평화의 유지" 두가지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적극적 평화)이다. 따라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평화의 회복에 중점을 두어 남북관계를 "적대적 협력"단계에서 "평화적 공존"단계로 진입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적극적 평화의 개념으로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포함함은 물론 평화의 유지를 항구화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평화적 공존"단계에서 "남북연합"단계로 진전시키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그림 1> 남북관계 진전구도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이전의, 즉 제한적 협력이 막 움트기 시작한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과제는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이른바 하위정치(low politics)분야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폭과 규모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정치 및 군사분야, 이른바 상위정치(high politics)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을 이끌어내어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평화적 공존의 단계로 진입시키는 일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소망스런 남북관계의 진전구도를 일거에 앞당겨 남북이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는 물론 정치·군사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광범위하게,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현 단계 남북관계의 화두는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경제·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심화시키는 한편,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한반도에 명실상부한 평화

적 공존관계를 반석에 올리는 일이다. 하위정치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이와 병행하여 상위정치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을 이끌어내어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평화적 공존이란 상생(相生)의 무대로 진입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볼 때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에 대한 남북한의 의지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 demilitarized zone)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서로가 합의하느냐의 여부에서 확인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무장지대는 모든 차원에서의 남북한의 이해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 명칭이 말해주듯 비무장지대는 서로의 정치·군사적 이해가 마주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나아가 환경 등 모든 쌍방의 이해가 필연적으로 얽혀있는 곳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합의한다는 사실은 바로 서로가 정치·군사·경제·문화·환경 등 포괄적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평화공존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서해 강화도 교동의 끝섬에서 시작하여 동해 고성외 명파리에 이르는 6백리의 잘려진 한반도의 허리인, 사실상 중무장지대화(重武裝地帶化)된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남북한이 어떠한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내용과 질을 풍부하게 한다는 의미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나아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교류·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의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도약시켜 적대적 협력에서 평화적 공존의 단계로 전이케 하는 결정적인 디딤돌을 마련함을 의미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이러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는 역사적 현실이다.<sup>3)</sup>

이러한 인식 아래 이 연구에서는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가 남북한이 포괄적 측면에서 이해가 합치하여 호응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이며, 동시에 남북관계를 명실상부한 평화공존의 관계로 진입케 할 수 있는 역사적 사업임을 논거하고, 이를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어 이를 바탕으로 왜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가 남북한의 전반적인 국가이익에 부합함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도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실현가능하고도 바람직한 사업인가를 논거한다. 다음으로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전반적 추진구도와 세부추진방안, 그리고 대북협상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에서, 특히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군사회담<sup>4)</sup>에서 한반도 화해·협력을 촉진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힘을 실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은 무엇인가를 아울러 제안한다.

- 
- 3) 2000년 9월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문산-장단역사이 12km구간을 연결하는 역사적인 경의선 복원사업과 통일대교-장단역 6km구간을 잇는 왕복 4차선 도로공사 기공식이 열렸다. 북한도 철도 단절구간인 장단역-봉동역사이 12km를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와 관련한 세부실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남북군사실무회담(제1차 2000.11.28, 제2차 12.5, 제3차 12.21)이 개최되었다.
  - 4) 남북한이 직접 군사접촉을 가진 사례로 1990년 7월 26일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시 박종권 공군소장과 김영철 인민무력부 부국장의 만남, 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정호근 합참의장과 김광진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영철 인민무력부 부국장 등 남북 고위장성의 접촉, 그리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에서 24회에 걸친 회담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9월 5일 이후에는 실질적인 남북한 군사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II.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고려사항

### 1. 비무장지대의 성격

비무장지대란 “국제법상 국가가 군사병력(military forces)의 주둔과 군사시설(military installations)의 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그 국가의 영토와 영해, 하천, 운하 그리고 그의 상부 공역을 포함하는 특정 지역이나 구역(areas or zones)”을 말한다. 다시 말해 “병력(armed forces), 전쟁물자(war materials), 군수공장(armaments factories)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을 말한다. 비무장의 범위에는 무기 혹은 군사장비의 판매나 이전, 기술 원조, 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핵물질의 이전도 포함되며, 넓게는 개인이 전쟁과 군복무로부터 귀환(returning from wars and military services)하여 민간인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포함된다.<sup>5)</sup> 이를 “개인적 비무장화”(individual demilitarization)라 한다. 비무장지대를 군비통제의 관점에서 보면 군비의 공간적 제한이 행하여지는 지대라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비무장지대의 설치근거는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국제연합군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휴전협정)이다. 그리고 휴전협정 체결 후 1991년 12월 13일에 남과 북이 체결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는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

5) 김명기, “비무장지대 평화화의 국제법적 구상”, 김인영·김재한 편, 『DMZ: 발전적 이용과 해체』 (서울: 소화, 1999), pp. 68~69.

휴전협정을 준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설치 근거는 휴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비무장화를 위한 비무장지대 설정에 관하여 휴전협정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경계선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적당한 표지물을 세우도록 한다(휴전협정 제1조 제4항), 비무장지대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로부터 군사역량 등을 철거한다(제1조 제13항 ㄱ목), 적대 쌍방사령관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하고, 특히 비무장지대내 적대행위의 금지에 관해 특별히 규정한다(제1조 제6항),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을 불문하고 비무장지대내로의 진입을 금지하고, 비무장지대를 진입하려는 지역의 사령관으로부터 특정한 허가를 얻어서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제1조 제8항, 제9항), 비무장지대의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은 각 당사자의 군사령관에게 그 책임이 있다(제1조 제10항),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의 위치를 비무장지대내의 판문점으로 정하고 필요시 비무장지대내의 다른 곳으로 이설할 수 있으며(제2조 25항 ㄱ목),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1개의 비행장을 건설·유지할 수 있다(제2조 제13항 ㄷ목) 등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비무장지대는 남북한의 어느 국내법이 아니라 휴전협정이라는 국제법에 의해 설치된 것이다.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관리와 감시도 남북한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군사정전위원회라는 국제기관(국제적 성격의 합동기관)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비무장지대의 법적 성격이 단순한 일 국가의 영역과는 다른 성질을 가짐을 시사한다.

그러나 비무장지대가 어느 국가의 영유권에도 속하지 않은 국제공역은 아니다. 그것은 남북 4km의 띠를 형성하는 남북한의 영유권하에 있는 지역, 접경지대이다. 다만 감시 및 관리권을 행사하는 기관의

국제성으로 인해 비무장지대가 현재 준국제적 성격을 갖는 중립화지역(neutralized zone)으로 변모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며, 분명히 휴전상태하에서만 지속되는 한시적인 것이다. 또한 비무장지대내의 인(人)과 물(物)에 대한 권한, 즉 통치권과 지배권은 일반적으로 주권국가(독립국가)가 자국영토내에서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영토주권 - 영역주권, 영토고권, 영토권, 영역권이라고도 한다 - 의 경우와는 달리 분할성을 보이고 있다. 비무장지대내 남측 지역에 있는 주민에 대해 남한이 단독으로 통치할 수 없고 또한 물(物)에 대해서도 남한이 단독으로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은 비무장지대내 북측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비무장지대의 통치는 군사정전위원회가 행사하고, 영유권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특수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sup>6)</sup>

전체면적 약 248km<sup>2</sup>에 달하는 비무장지대는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있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에 있어서도 유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정부에게 관할권이 이양된 후 2년간 생태계 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지역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sup>7)</sup>

6) 제성호,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서울: 서울프레스, 1997), pp. 85~87 참조.

7) 한편 민간인통제선(civilian control line)은 1954년 2월 미육군 제8군단 사령관의 직권으로 설정되었다. 한국전 휴전 후 미육군은 민간인의 귀농을 규제하는 귀농선을 설정하고 그 북방에 민간인 출입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휴전선 방어임무를 한국이 담당하면서 1958년 6월 군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가되었고 귀농선은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설정 당시 기준 총면적은 1,528km<sup>2</sup>(강원도 1,048km<sup>2</sup>, 경기도 480km<sup>2</sup>)이며 강원도의 고성, 인제, 화천, 양구, 철원군과 경기도의 연천, 파주, 김포, 강화군 등 2도 9군 24읍면 213개리에 걸쳐 있다. 민통선 북방지역은 비무장지대내 남방한계선에서 5~20km 밖에 설치된 민통선 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일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2.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고려사항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법적 근거는 휴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남북기본합의서이다. 그 제12조에서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신뢰구축 차원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를 협의·추진할 것을, 그리고 제19조에서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할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남북기본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실시를 위해 채택된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있는 조항들을 산발적으로 규정, 예를 들어 부속합의서 제3조는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문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휴전협정의 경우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1조 제1항의 비무장지대 설치목적, 즉 완충지대를 통한 적대행위의 재발방지에서 평화적 이용에 대해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완충지대화는 남북한간에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이룩하며 궁극적으로 평화통일 달성을 의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휴전협정의 정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sup>8)</sup>

학자에 따라서는 그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민족발전공동계획 등을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sup>9)</sup> 그러

8) 이장희, “세계화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 기본문제”,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세계화와 통일정책의 당면과제』 (제9회 통일문제 세미나, 1995.9.20), p. 21.

9) 예를 들어 제성호,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pp. 96~98 참조.

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민족발전공동계획은 남한측에 의한 일방적 조치이기 때문에 남북한 쌍방에 의해, 혹은 국제법에 의해 규정되거나 의미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북한과 합의한 남북관계법에서 또는 북한이 동의한 국제법에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남북한은 비무장지대에 정치·군사·경제·환경·문화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방안이 실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포괄적인 측면에서 남북한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은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어야 그 실천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남북한이 합의하여 실천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은 어떠한 측면에서 남북한 양쪽이 가지는 다양한 성격의 이해관계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할 것인가?

### 가. 정치적 측면

먼저 정치적 측면으로 남북 쌍방의 체제나 당국에 최소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체제나 당국의 정치력·외교력을 대내외에 선전·고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이 쌍방의 대남·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배치되어서는 안된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이 남북한 쌍방에 정치적인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기본전제이며, 이용방안이 양쪽에게 정치적 이득을 크게 줄 수 있을수록 그 방안의 실천성은 제고될 것이다.



제안된 비무장지대의 이용방안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북한당국의 국내적, 혹은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체제유지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제안된 이용방안이 북한의 체제유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고, 반대로 북한당국의, 김정일위원장의 정치력을 선전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한반도의 평화확보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제안일 경우에는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응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북한에 대한 이와 같은 고려는 역으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 나. 군사적 측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이 현재의 군사적 상황을 자국에 유리하게 개편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자국에 불리하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 비무장지대 이용방안이 아무리 평화적인 의미를 지닌다 하더라도 남북한이 자국의 군사적 안보의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낀다면 방안의 실행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방안의 군사적 측면은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민주화, 경제적 발전,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자율성 등 사회 모든 측면에서 우리와 어깨를 견줄 수 없는 북한이지만 군사적 측면, 구체적으로 말해 군사지리적 측면을 포함한 군사력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쌍방의 총체적인 군사력의 우열을 분석하는 일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우리의 수도 서울로부터 불과 북방 수십km 지점에 일거에 서

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화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는 군사지리적인 잇점은 북한이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압박력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배치된 북한 군사력의 후방배치나 축소를 전제한다든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대남 군사적 압박력을 떨어뜨리는 제안이라고 여겨진다면 북한은 거부,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거부할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이 무엇보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남북한간 합의의 물꼬가 터져야 할 현재의 초기단계에서는 남북한 현재의 군사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최소화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는 아이러니가 성립되는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가 평화적 공존관계로 진전되고 군사적 신뢰감이 구축될 경우에는 비무장지대를 둘러싼 남북한의 군사력 재배치나 군축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과 함께, 혹은 별개로 활발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합의한 이유는 이 사업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그들의 전반적 대남 군사압박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경제적 실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 다. 환경적 측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이 지난 반세기간 조성된 환경과 생태계를 오염·파괴시켜서는 안되며, 오히려 보호·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 환경보호와 환경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sup>10)</sup> 일반적으로 정치 및 군사적 고려에 이어 다음 우선순위는 경제적 측면이 되어야 할 것이나, 비무장지대의 특수성은 이에 앞서, 최소한 남한의 입장에서는 환경적 고려를 우선하도록 한다.

주지하다시피 비무장지대는 한국전쟁 기간 피아가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한반도 전역의 군사적 대치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고 그 남북 2km를 그은 지역이다. 따라서 비무장지대는 당시에 초토화되었던 지역이다. 그러나 이후 근 50년간 인적의 침입이 끊기면서 이 지역은 자연이 자생력으로 스스로를 복원한 지역이다.

인위적으로 완전히 훼손되었던 생태계가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여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만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생태계로 전변되었다. 전쟁으로 파괴된 자연생태계가 인간의 간섭없이 자기조절로 복구되어 그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역으로 변모하였고,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환경손상과 오염으로부터 격리된 유일한 국토가 되었다.

물론 전쟁 이후 남북한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요구에 의해 부분적으로 비무장지대의 자연이 훼손된 부분이 있고, 또 생물다양성이나 생태적 여건이 서부지역, 중부지역, 동부지역 등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할 때 차이가 있음도 사실이다.<sup>11)</sup>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한반도 환경의 보호·개선을 위한 남북 환경교류·협력을 준비·추진하고 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해 최근 “남북환경포럼”의 구성이 제안되었다. 손기웅, “남북환경협력의 의의와 추진 기본방향”, 환경운동연합,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0.7.27), pp. 4~14; 손기웅, “한반도 생태계보전과 남북환경포럼의 역할”, 환경운동연합, 『한반도 생태계보전을 위한 남북환경협력방안』, (2000.10.23), pp. 1~11 참조.

11) 민통선 북방지역은 비무장지대와 마찬가지로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왔기 때문에 자연환경 상태가 비무장지대와 아주 유사하거나 같은 자연의 연속으로, 즉 민통선 지역은 비무장지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창(窓)으로 볼 수 있다. 그간 민통선에 대한 각종 학술조사는 이 일대의 자연상, 특히 삼림상이 기대만큼 잘 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환경처가 조사·발표한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의 “녹지자연도” 현황에 따르면 강원

고 전반적으로 비무장지대는 희귀동·식물과 희귀어류가 서식하고 조류가 도래하는 생물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으며 수질, 대기, 토지의 오염이 없는 청정지역이다.<sup>12)</sup>

도 지역은 20년생 미만의 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정도를 일컫는 등급7 이하가 전체의 88.4%를 점유하고 있다. 향로봉 산맥 일대는 50년생 이상의 나무가 주를 이루는 등급9의 임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사정이어서 등급7 이하가 87.3%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등급2 이하가 51.2%나 돼 사실상 삼림생태계의 발전이 중단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자료는 민통선 북방지역을 포함한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의 삼림생태계가 상당한 범위에서 생태적 천이가 중단된 방해극상(妨害極相)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 온대지방의 경우 삼림이 파괴된 후 극상림(極相林, climax forest)에 도달할 때까지 150~200년이 걸린다고 볼 때, 현재 이 일대는 생태적 천이(ecological succession)가 지속중이거나 천이 자체가 방해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전쟁 당시 이 일대가 장기간 치열한 전장의 한 가운데였으며, 휴전 후에도 군대의 주둔으로 사실상 삼림생태계의 보전이 잘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농경지와 취락지는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됨으로써 습원생태계가 잘 발달된 지역이 많다. 김화 서쪽부터 임진강 하류까지가 그 대표적 지역이다. 습지는 다양한 식물이 모여 살기에 좋은 땅이며 각종 미생물의 번식을 돕고 토양 소동물을 증식시킴으로써 자연적으로 양서류, 파충류, 야생조류 등에 좋은 서식환경이 되고 있다. 최근엔 국지적으로 인위적 파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이 일대의 자연생태계를 전쟁 파괴로부터 복구되어가는 생태계 천이과정,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자연질서의 형성, 생물종다양성 문제에 더 비중을 두고 접근하는 경향이다. 김인영·김재한, 『DMZ: 발전적 이용과 과제』, pp. 408~409 참조. 한편 녹지자연도는 인간에 의한 육역의 인위적 개별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물군락의 종조성을 기반으로 녹지성과 자연성을 고려하여 육지역을 10등급으로 나누어서 표시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크게는 개발지역, 반자연지역, 자연지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지역은 2~4개의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각 등급은 다음과 같다. 1등급: 시가지·집단지주지, 2등급: 농경지, 3등급: 과수원 등, 4등급: 저경(低莖) 2차 초원(A), 5등급: 고경(高莖) 2차 초원(B), 6등급: 조림지, 7등급: 2차 유령림, 8등급: 2차 장령림, 9등급: 자연림, 10등급: 고산자연초원, 0등급: 수역. 접경지역의 녹지자연도 등급별 현황은 통일원,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 기초조사 연구』 (서울: 통일원, 1997), pp. 365~366 참조. 한편 비무장지대와 그 인접지역은 미군의 화학무기에 의해서도 훼손되었다. 주한미군은 1968년 1·21 사태 이후 “식물통계계획 1968”이라는 작전계획을 세워 한·미 합동으로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까지 휴전선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이남 민간인 통제구역일대 2,200만평에 고엽제를 집중 살포했다. 주요 살포지역은 민통선 북방 남방한계선 이남 일대 철책선 인근 1백m구간, 전방관측소(OP)·지휘소(CP) 등 주요시설 인근 및 주요 전술도로 인근 30m구간이었다. 『서울방송』, 1999.11.16.

이러한 지역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이란 이름 아래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일은 한반도 유일의 자연의 보고, 민족의 천연자원을 파괴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비무장지대를 전혀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두자는 주장도 극단에 치우치는 것이지만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경제 이익이 앞서서 이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

인간의 침입을 인내하던 환경이 어느 포만점에 이르면 급격하게 악화되어 다시 회복하기에는 엄청난 시일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이, 현재의 남북한 주민이 겪으면서 체득한 공통의 상식이다.<sup>13)</sup>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의 개발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는 환경적 양심이 향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고민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자리잡혀야 한다는 것은 민족적 의무라 할 것이다.

- 
- 12) 비무장지대는 남방계 식물의 북방한계 분포지대, 북방계 식물의 남방한계 분포지대에 위치하는 바로 식물의 접이지대이다. 식물은 조류(鳥類), 수류(獸類), 곤충의 텃밭으로서 이 곳에서 인간의 간섭없이 곤충들은 자기들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대변할 만한 대표적이고 앞으로도 영구 보존되어야 할, 학술적으로, 특히 조류와 수류 등 야생동물의 도래 또는 서식지로서 괄목만한 곳은 동·서해안지역의 수조류 도래지, 내륙중부의 2개 두루미류 도래지, 동부의 고준지역(高峻地域)에 위치한 산양(천연기념물 제217호)의 서식 등을 들 수 있다. 비무장지대와 접경지대에서 관찰되는 수·조류에 관하여는 국토통일원, 「비무장지대 자연생태계 조사연구」(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9) 참조. 그의 비무장지대와 접경지대의 생태계, 천연자원 등에 관하여는 조규송,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강원사회연구회 편, 「분단강원의 이해: 상황과 전망」(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pp. 125~139; 강영선, 「비무장지대 공동개발을 통한 남북한 상호협조상의 문제점 및 대책」(서울: 국토통일원, 1973); 강영선, 「비무장지대의 천연자원에 관한 공동연구」(서울: 국토통일원, 1973); 강영선, 「비무장지대의 천연자원에 관한 연구」(서울: 국토통일원, 1972) 참조.
- 13) 북한의 환경실태와 정책에 관하여는 손기웅, 「북한 환경문화 연구: 환경정책과 환경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 하(下)」,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99-202; 손기웅, 「북한의 환경정책」,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 「환경친화적인 남북경협을 위한 토론회」(2000.7.14), pp. 1~16 참조.

한편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한반도 환경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장기간 국토분단에 따른 생태계의 단절과 고립화 현상을 극복하고 대기·하천·해양 등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남북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지구환경보전이라는 국제적 기류 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한의 환경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단절된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복원하여 남북한의 환경문제와 동북아 환경문제 그리고 지구 환경문제에 따르는 도전을 극복하고 한반도 환경을 안정된 상태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현 시대의 요청이다.

#### 라. 경제적 측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남북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이득의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이 아무리 환경친화적이라고 해도,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남북한의,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실행가능성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식량난 해결에 몰두하고 에너지난으로 인해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서 경제적 이해를 동반하지 않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에 적어도 현재의 북한이 귀 기울이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방안이 경제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은 기본요건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환경적 고려도 동시에 이루어져 환경친화적이면서도 경제적 실리를 남북한이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마. 문화적 측면

비무장지대에 산재한 문화유적·유물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존·관리할 수 있어야, 나아가 한반도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여야 한다. 한국전쟁중 비무장지대 내의 문화유산이 크게 훼손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곳에는 고인돌과 같은 선사시대의 유적은 물론 삼국시대, 태봉국, 고려시대의 가치있는 문화사적(왕궁, 산성, 사찰, 고분)이 산재해 있거나 그 흔적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는 반세기 전 우리가 살던 집과 가꾸던 농경지, 우리가 닦아 놓았던 길과 우리가 공유하던 공공시설, 선조들이 남겨 놓았던 슬기, 그때의 풍습과 풍속까지 고스란히 묻혀 있는 문화의 유적지이다. 풀 썩을 헤치면 옛 집터들이 드러날 것이고, 검은 구들장과 돌담들은 그 집이 그 집이었던지, 마을이 남향을 향해 있었는지 동향을 향해 있었는지를 말해줄 것이다. 일제시대 때 건설한 남대천 양회 다리는 당시 시멘트를 양생하는데 모래와 자갈의 비율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해 줄 것이며 금강산으로 가던 허물어진 5번 국도에서는 당시 도로들의 설계와 시공 방법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즉 비무장지대는 우리 민족 각 시대의 역사, 문화, 수난사를 함께 볼 수 있는 역사의 산현장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남북한 어느 쪽에서도 비무장지대 일대에 대한 유적발굴, 학술조사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문화유산의 전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도 불구하고 잔존한 문화재마저 복원되지 못하고 폐허인 채로 50년간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은 우리 선조의 역사의 숨결과 자취가 남아 있는 이 곳을 문화적으로 복원, 유지, 개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족문화 창달의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바. 국제적 측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이 고려해야 할 이상과 같은 포괄적인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좁게는 한반도 주변국가, 넓게는 국제사회의 이해에도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비무장지대는 직접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얽혀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 유엔 등 세계적인 관심지역이다. 이를 고려할 때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이해도 함께 아우르는, 그것도 정치·군사·환경·경제·문화 등 포괄적 측면에서 이들의 이해에 부응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이 제시될 때 주변국과 국제사회는 이를 지지할 것이며, 그 지지를 바탕으로 평화적 이용방안의 실현성과 지속성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이상에서 남북한의 정치·군사·환경·경제·문화 등 포괄적 국가이익에 부응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이해도 포용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방안이 제안될 때 사업의 내용이 풍부하게 됨은 물론 사업의 실현가능성도 제고될 것이란 점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볼 때 기존의 비무장지대 평화적 활용계획(평화시, 생태공원 혹은 물류기지 건설 등<sup>14)</sup>)은 이상과 같은 남북한의 이해를 포괄적으로 설득력 있게 고려하지 않거나,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논거에 소홀하였다고 평가된다.<sup>15)</sup>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현 단계

14) 2000년 1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에 따른 비무장지대 관련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악산과 금강산 지역 일대를 남북관광특구로 지정하며 이를 위해 국제자본을 유치하고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국제관광지로 탈바꿈시킨다. 둘째, 철원과 휴전선을 관통하여 금강산으로 가는 금강산선 철로를 복원한다. 셋째, 철원 이북 지역에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남북한 시범농장을 개설한다. 넷째, 동부의 금강산, 설악산 지역에서 임진강 유역과 서해 평화의 섬 강화도까지의 동서 횡단지역을 한반도 평화벨트로 지정한다.

15)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그 동안 남한이 제안한 현황에 관하여는 제성호,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pp. 88~98 참조. 한편 제안된 주장들을 김정후는 현실적 접근, 경제적 접근, 평화적 접근으로 분류하였고, 권기현은 생태적 보전론자(ecologist), 문화론자(culturalist), 기념비적 사업론자



에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구상 - 예를 들어 비무장지대내 평화시 혹은 물류기지 건설을 제안하면서 비무장지대 인근 군사력의 후방배치나 군축의 주장을 제안 - 으로 이용방안의 실천성을 스스로 제한하였다고 평가된다.<sup>16)</sup> 최근 평화와 환경을 동시에 접목하면서 환경친화적인 비무장지대 이용의 구체적 사례로 추진되고 있는 “평화생명마을” 운동이 주목되고 있으나, 동 계획 역시 정치·군사·경제적 측면에서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낼수 있는 이론화 작업과 실천적 과제가 남아 있다.<sup>17)</sup>

---

(monumentalist), 개발론자(developmentalist) 등 네가지 논리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들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남북한으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동시에 지지를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김정후, 『비무장지대의 공동개발방안』 (서울: 국토통일원, 1973), pp. 35~37; 권기현, “민통선 지역의 보존·개발방안”, 김인영·김재한, 『DMZ: 발전적 이용과 해체』, p. 157.

- 16) 한편 북한의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1987년 7월 23일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중감위 감시군 주둔, 무력축소·철수·검증, 중감위 권능확대, 중감위 감시군 조직·배치 등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한·미·북간에 다국적 군축협상을 1988년 3월 제네바에서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1988년 1월 7일 북한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가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제의하면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중감위 성원국 군사인원으로 조직된 중립군 감시군 배치), 대규모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 육·해·공에서 일체의 군사행동 중지, 우발적 충돌사건의 확대 방지를 위한 고위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가설 등을 주장하였다. 1990년 5월 31일 북한의 상기 연합회의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제의하면서 비무장지대내에 배치된 모든 군사인원들과 군사장비의 철수,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모든 군사시설물의 해체, 비무장지대를 민간인들에게 개방하며 평화적 목적에 이용 등을 주장하였다.
- 17) 그간의 접경지역 관리방안이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계획·추진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많았다는 반성에서 강원도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급년도부터 추진하여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일대 비무장지대내 50여만평에 들어서게 될 평화생명마을에는 자연생태공원과 평화광장, 생명마을이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한반도 특산·토종 동·식물을 회복하는 유전자 보호·육성지로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강원도와 인제군은 접근로 정비 등 기반시설 공사를 지원하고, 민간단체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대인지뢰 제거와 관련하여 국내·외 평화단체들과 함께 지뢰 뺏기운동과 생명마을 가꾸기운동을 펼쳐 세계인의 자유와 평등 이념을 고취시키기로 하였다.

### Ⅲ.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의 의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이 현 단계 남북관계에서 가지는 의미,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이 좀 더 실천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검토되어야 할 고려사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북한과 구체적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합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가 우리의 국가적 사명으로 남아 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다행스럽게도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간에 군사회담이 반세기간 단절되었던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을 계기로 열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비무장지대에 가지고 있는 정치·군사·환경·경제·문화적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비무장지대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가 가장 적절하고 실천성이 있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이라 판단된다.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남북한 모두의 포괄적인 국가이익에 부합하여 서로로부터 호응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지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통일 이후에는 통일조국이 동북아평화 나아가 세계평화의 유지와 환경보호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남북한과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될 수 있다.

#### 1. 남북한 차원

##### 가. 정치적 측면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남북한의 정치·군사·환경·경

제·문화적 국가이익에 부합하여 남북한 쌍방으로부터 호응받을 수 있다. 우선 정치적 측면으로 남북 쌍방이 평화의 구현을 상징하는 유엔<sup>18)</sup>의 기구를 유치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 최초로 유엔기구를 유치함으로써 남북 쌍방은 정치외교력을 국내 외에 과시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가 남북간 화해·협력을 촉진하여 평화공존으로 진입하려는 쌍방의 대북, 대남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대북, 대남정책, 나아가 통일정책에도 모순되지 않는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지속하여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평화공존함으로써 상호 공영하고 동시에 민족통합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남한의 입장에서 그 구체적 실천방안이 될 수 있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그 일환으로 시도될 유엔환경기구의 유치가 반대되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북한이 남한과의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북한이 변화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18) 1945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한 유엔은 평화유지기구로서 창설되었으며, 평화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엔은 헌장 제1조에 그 목적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민족들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며,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유엔정신에 비추어 볼 때 평화유지가 유엔의 기본목적이며, 열거된 다른 목적들은 평화를 위한 여건조성이라는 보충적 활동을 제시한 것으로 모두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Leland M. Goodrich, *The United Nations in a Changing Worl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p. 11.

성사,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장관급회담·국방장관회담·경제실무회담·군사실무회담 등 다차원적 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이벤트성 사업의 지속만이 북한의 변화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 북한이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방안 수용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남북당국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북한의 변화를 보여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박재경 대장, 김용순 아태위원장을 남한에 보내고, 조명록 총정치국장을 미국에 보낸 이유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측근을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게 혹은 앞장서게 하려는 의도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군부의 실력자를 전면에 나서게 하여 군부가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도록 단결시키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북한의 대남정책이 “통일전선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본질적으로 변화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최소한 당분간 남한과 공존하겠다는, 전술적인 변화 이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6·15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의 통일방안으로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상정하는 상호체제의 인정과 공존으로 합일점을 모색하였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sup>19)</sup>

한편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와 관련하여 한반도에 화해·협력 분위기가 성숙될 것이므로 이는 북한의 대미, 대일관계를 진

19) 북한의 변화여부, 변화정도에 대한 평가에는 여러가지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북 군사적 안보태세는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군사안보적 준비는 북한 군사역량에 대한 현실적 평가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북한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한 분석이나 평가에 기초하여서는 안된다.

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고려할 때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가 남북한 쌍방의 대남 및 대북정책, 통일정책, 대외정책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유엔기구의 유치는 남북 쌍방의 대유엔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유엔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대유엔 외교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인류 공동번영에 적극 참여하며, 유엔 및 각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모든 주요 문제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을 이룬다는 장기적 목표 하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의 적극 참여, 유엔의 주요활동에 대한 재정적 기여증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한국인 진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1996~97) 및 경제사회이사국(ECOSOC) 이사국(1997~99)으로 활동하였다.<sup>20)</sup> 그리고 주요 유엔회의의 의장단으로도 참여하여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부의장국(1992.6.), 유엔총회 제1위원회(정치, 군축, 안보) 부의장국(1992.10.), 제48차 유엔총회 부의장국(1993), 제52차 유엔총회 제2위원회(경제, 재정) 보고관(1997.10), 제53차 유엔총회 제4위원회(특별정치, 탈식민) 부의장(1998.10), 지속개발

20) 한국의 유엔 및 유엔산하기구 이사국, 위원국 수임 실적 및 현황(2000년 1월 현재)은 다음과 같다. 유엔의 기구로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1996~97), 유엔경제사회이사국(1997~99), 인권위원회(1993~2001), 사회개발위원회(1996~2003), 마약위원회(1996~2003),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1992~2000), 여성지위위원회(1994~2001), 계획조정위원회(1993~2001), 지속개발위원회(1993~95, 1999~2001), 인구개발위원회(1996~97, 1998~2001), 유엔개발계획(1993~95, 1998~2000), 유엔환경계획(1988~89, 1994~2001), 유엔인구활동기금(1998~2000), 유엔아동기금(1995~97), 유엔전문기구로서는 식량농업기구(1995~2000),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1997~2003), 세계보건기구(1995~98), 만국우편연합(1994~2004), 국제전기통신연합(1989~2002), 국제노동기구(1996~99), 국제해사기구(1991~2001), 유엔공업개발기구(1995~2003), UNHCR집행이사국(2000~), 유엔독립기구로서는 국제원자력기구(1995~2001) 등이다.

위원회 부의장(1999.4.)으로 활동하였다.<sup>21)</sup> 환경과 관련해서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이사국(1988~89, 1994~97, 1998~2001),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의 이사국(1993~95, 1999~2001)으로 활동하고 있다.<sup>22)</sup>

한편 북한도 적극적인 유엔외교를 펼치고 있다. 북한은 70년대부터 유엔총회를 비롯한 각종 유엔회의의 참석을 통해 고려연방제 등 그들의 통일방안을 선전하는데 주력해왔다. 탈냉전의 국제환경에 따라 유엔회원국으로 가입(1991.9.17)하여 유엔을 대미외교 창구로 적극 활용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유엔산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식량지원 획득에 중점을 둔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유엔의 기구들, 예를 들어 UNEP,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개발계획(UNDP) 등을 해외자본과 기술의 유치, 해외 진출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여 대외개방의 창구로 적극 활용

21) 유엔 관련 회의로는 제18차 아태지역 마약법 집행기관장 회의(1993.9.13~17), 아태지역 인권워크샵(1994.7.18~20), 아태지역 여성담당 국가기구회의(1996.9.16~19), 여성의 무보수노동 가치평가에 관한 국제워크샵(1997.5.28~30), ESCAP 아태장애인 10개년 중간평가회의(1997.9.26~29), UNDP 밀레니엄포럼(1998.10), 아시아·아프리카 수출진흥포럼(OSCAL Forum, 1998.12), 1999 서울 NGO세계대회(1999.10.15~17),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협력포럼(2000.2.14~17) 등을 개최하였다.

22) 한국은 특히 평화, 군축 및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노태우 대통령이 제47차 총회 기조연설(1992.9.22)을 통해 냉전후 유엔의 평화유지 및 분쟁해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사무총장의 “Agenda for Peace”를 환영하는 한편 군축, 환경, 개발 등 범세계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김영삼 대통령은 유엔 5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특별정상회의(1995.10.22)에서 유엔의 분쟁예방능력 제고, 경제·사회 및 환경문제 해결능력의 강화를 지적하였으며, 1997년 6월 23일 뉴욕에서 개최된 환경특별총회에서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 및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 결집을 강조하였다. 한편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은 총회 기조연설(2000.9.7)을 통해 유엔이 지난 20세기에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 빛나는 업적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21세기에 유엔이 해결해야 할 막중한 과제로 세계평화 실현, 테러 방지 등과 함께 지구환경 보존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유엔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할 것을 호소했다.

하고 있다. 자국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유엔 기구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UNDP는 유엔기구로는 유일하게 평양에 상주대표부를 두고 있을 정도로 북한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sup>23)</sup> 2000년 1월 현재 북한은 총 18개의 유엔산하 기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표 1>과 같다.

북한이 유엔헌장과 원칙을 중시하고 있음은 최근 러시아와 체결한 공동선언(2000.7.19)에서 엿볼 수 있다. 북한의 중앙방송은 『조-로공동선언』 전문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7.20).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수뇌상봉과 회담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었다. 두 나라 지도자들은 쌍무관계 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회담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2000년 2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전통적인 친선관계와 선린, 호상신뢰, 다방면적인 협조를 강화하며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존중하고 국제적 안전과 안정을 이룩하며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에서 평등하고

23) 1994년 UNDP는 남북한에 각각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고 있는 이점을 살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역할을 자임하면서 “한반도 경제기술협력사업”을 제의하였다. 총 15개의 UNDP 제의사업에는 환경분야와 관련한 다음의 사업들이 포함되었다. 투자자들의 원활한 투자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남북한 환경법·기준의 표준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환경기준 표준화”, 남북한지역 기후변화 영향 모델을 개발하는 “기후변화 영향분석”, 남북한간의 수자원 기상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공통의 보고서 양식을 확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상정보”, 한반도 해역·해양오염방지 및 지역해양관리 정보체계 수립도모를 통해 남북한이 가지는 해양오염방지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지원하는 “해양오염 및 지역해양관리”, 환경관련 각종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전자네트워크 구축”, 남북한 내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지도 및 현황 자료를 작성하는 “생물다양성 지도 및 목록 작성”, 남북한이 모두 산성비의 피해를 받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지역적인 대기오염의 모델을 연구하는 “환경감시”, 비무장지대의 각종 생태계 자원보호를 위한 “비무장지대 보존” 등이다. 외무부, 『보도참고자료』 (1994.12).

호혜적인 협조를 발전시키려는 서로의 염원을 시위하였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 북한의 유엔산하기구 가입 현황(2000.1 현재)

영문약어	국문명칭
UN총회 산하(6)	
UNCTAD	유엔통상개발회의
UNDP	유엔개발계획
UNEP	유엔환경계획
UNFPA	유엔인구활동기금
UNICEF	유엔아동기금
WFP	세계식량계획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1)	
ESCAP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UN전문기구(11)	
FAO	유엔식량농업기구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
IMO	국제해사기구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IDO	유엔공업개발기구
UPU	万国우편연합
WHO	세계보건기구
WIPO	세계지적재산기구
WMO	세계기상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유엔을 가일층 강화하고 갱신하며 세계문제들에서 그의 중심적 역할을 강화하는데 협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유엔현장을 유린하는 힘의 사용 또는 힘의 사용위협이 국제관계체계의 근본에 도전하는 허용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견해를 기초로 삼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유엔 천년기 수뇌자회의와 총회가 성과적으로 그리고 결실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긴밀히 호상협력할 것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성원국들이 건설적인 기여를 할 것을 호소한다.”

북한이 휴전협정의 적대당사자인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지속적으로 주장<sup>24)</sup>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유엔 자체에 대해서는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가 북한의 대유엔정책에 배치되지는 않는다. 특히 환경과 관련하여 북한은 UNDP를 매개로 1998년부터 식량난 해결을 위해 “농업복구와 환경계획”(AREP)<sup>25)</sup>을, 역시 UNDP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개발계획(TRADP)과 관련하여 두만강개발지역은 물론 동북아의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sup>26)</sup> 한편 금년도 11월 중순부터 UNEP는 북한의 환경훼손 실태를 조사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정치적 측면에서 남북한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된다.

24) 제55차 유엔총회(2000.9.15)에서 북한은 “조선반도에서 북남 공동선언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이제 조-미, 조-일 사이의 적대관계만 해소되면 동북아시아에는 새로운 건전한 국제관계가 수립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고무적인 과정에 부합되게 유엔도 냉전의 유물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하였다.

25) 손기웅, “대북 농업지원 협력 현황과 추진방안”,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1998), pp. 291~293 참조.

26) 손기웅,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33~35 참조.

## 나. 군사적 측면

한반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촉진하여 평화공존을 이룩하려는 우리 군의 방침에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사실상 세계 제1의 중무장지역에 유엔기구를 유치함으로써 현재의 남북한 군사력의 이동·변동 없이도 긴장완화, 전쟁억제, 평화유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군사적 현상유지가 당면한 경제회생을 위한 차선의 방편으로 파악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군사적 현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의 북한 경제운영에 커다란 원동력이 되고 있는 군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sup>27)</sup> 북한이 대남군사적 압박력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가 그 소재지 및 접근로에 국한한 군사적 변화만을 상정하고 있어 북한군의 전반적 대남압박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우리의 입장에서 비무장지대내 유엔기구의 존재는 향후 휴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이후 예견될 수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

27) 북한이 인민군을 다양한 경제분야에 투입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중앙방송』(2000.10.19)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18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대장 현철해와 박재경 등을 대동하고 인민군 군인들이 건설한 메기공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새로 일떠선 메기공장은 최신 양어과학 기술에 기초하여 건설한 가장 현대적인 공장으로서 메기생산의 모든 공정들이 고도로 과학화, 집약화되어 있다”고 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살찌우기못과 새끼고기못, 종자고기못, 야외 살찌우기못을 비롯한 생산공정들을 돌아보고 군인 건설자들이 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의 또 하나의 메기공장을 훌륭히 건설한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 『중앙통신』(2000.10.31)은 “인민무력부와 각급부대 지휘관, 병사들은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을 다 맡아 할 일념으로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련관탄광 등에서 전력,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선전했다.

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국제적으로 담보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sup>28)</sup>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남북한이 평화공존 등 각종 보장적 문서에 합의하겠지만 문서가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군이 해체되고 난 뒤의 공백을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유엔기구가 일정 부분 메워줄 수 있는 것이다. 이질적인 사회체제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증폭을 평화의 구현을 상징하는 유엔기구 자체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유엔기구의 존재를 훼손하면서까지 어느 일방이 무력도발을 일으키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란 유엔기구의 “인질”적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의 허리에 위치한 유엔기구의 존재 자체가 남북한 주민에게 정신적인 안정감을 부여할 것이다.

28) 유엔군사령부는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로서 1950년 7월 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된 보조기관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을 대신해서 전쟁수행책임을 맡았다. 미국은 1953년부터 휴전협정 이행에 관한 유엔군사령부의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해 오고 있다. 따라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유엔군사령부의 권한범위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유엔을 대신해서 구체적인 휴전협정당사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는 미군 이외는 실제로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다. 유엔군사령부는 현재 군사적 의미는 없다. 유엔기(旗)도 군사정전위원회와 한정된 구역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엔군사령부는 법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1975년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휴전협정유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면 1976년 1월 1일을 기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1975년 유엔총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2개의 상반된 결의가 채택되었다. 하나는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휴전협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arrangements)를 마련하여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수 있도록 휴전협정을 대체할 장치에 관해 직접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all the parties directly concerned)이 협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또 다른 결의는 한국에 있어서 외국의 간섭 종식을 촉구하고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유엔 기치(旗幟)하에 남한에 주둔해 있는 모든 외국군 철수를 위해 휴전협정의 실제당사자들(the real parties to the armistice agreement)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치영, 『유엔정치와 한국문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p. 296.

#### 다. 환경적 측면

비무장지대에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함으로써 남북한은 “21C의 화두”인 환경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비무장지대에 유엔환경기구가 들어서고 모든 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전개됨으로써 비무장지대내 환경보호·개선은 물론, 한반도 나아가 지역의 환경보호·개선에 파급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엔환경기구의 설치와 연계하여 향후 평화생태공원의 조성,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환경캠프의 설치, 각종 국내·국제환경행사의 진행 등이 이루어질 경우 비무장지대는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와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남북한은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다. 90년대 중반까지 악화되던 북한의 환경문제는 경제난으로 인한 공장가동율의 저하로 현재 정체상태에 놓여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산림은 심각하게 황폐화되었다. 만약 북한의 경제가 희생하여 공장이 가동될 경우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은 급격하게 악화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환경문제를 개선할 경제적 여력도, 기술적 능력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UNEP, UNDP 등 국제기구를 통해 환경개선에 필요한 물적,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무장지대에 유엔환경기구가 유치될 경우 북한은 자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환경에 이익을 가져오는 개발도상국의 환경분야 투자 및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지원(무상 또는 양허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은 수혜기준을 국

제환경협약상의 수혜대상국, 국제기구(World Bank, UNDP)의 수혜대상국(1992년도 World Bank 지원기준: 1인당소득 4,465달러 이하 국가)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4개 지원대상분야(focal areas)로 지구온난화방지, 생물다양성보존, 국제수역보호, 오존층보호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 가담한 북한이 그 이행과 관련한 활동을 비무장지대 내외에서 전개할 경우 자금지원대상의 우선 순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한 GEF의 주요 지원대상분야가 지구환경협약과 “의제 21”(Agenda 21)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에도 있으므로 북한이 “의제 21”의 수행시에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환경문제는 삶의 질 개선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넘어야 할 높은 산이다. 유엔환경기구의 유치가 국가전반의 운영에 환경보호와 개선을 상수(常數)로 고려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나아가 한반도 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 협력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치사업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한반도 생물다양성의 보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종자(種子)전쟁중이다. 종자자원의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간에 종자대전(種子大戰)이 보이지 않게 치러지면서 약소국들은 새로운 종자식민시대를 맞고 있다. 1992년 리우 환경회의의 생물다양성협약은 어느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생물유전자원의 보유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이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세계 각국의 동식물 자원을 확보, 독점하는 경쟁을 치열하게 치렀다.

동식물은 차세대의 식량과 약품자원이다. 생명공학 산업의 발달은 이미 이들 자원이 천연자원과 원유자원을 능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씨앗이 경제무기로 둔갑한 것이다.<sup>29)</sup> 품종 하나를 개량하거나 의약품 하나를 개발하자면 이제 엄청난 로열티를 물고 나뭇잎이나 뿌리, 씨앗을 사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는 유전자원의 부국(富國)이 아니며 그나마 토종(土種)도 없다. 일본은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의 동식물자원을 수탈하였다. 이어 전쟁이 휩쓸었고, 유전자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남북한 정부는 양적 생산위주의 영농정책을 밀어붙였다. 남한의 경우 약 3만종의 토종이 멸종되었거나 사라져가고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sup>30)</sup> 잃어버린 우리의 토종 상당수가 지금 미국이나 일본의 시험포에서 자라고 있다.

미래에 가장 경제성이 있는 자원이 생물자원이라 할 때, 산업화 속에 하찮게 취급하던 우리의 종, 우리의 풀이 비무장지대에 국지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여기에 있으며, 이 곳의 유엔환경기구 유치는 그 실천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 라. 경제적 측면

비무장지대에 유엔기구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29) 인류는 의·식·주, 특히 음식물과 의약품, 산업용 산물들을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로부터 얻어왔으며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는 인류의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다. 개도국 인구의 80%를 돌파하는 의약품을 동식물에서 추출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조제되는 약처방의 25%가 식물로부터 추출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3,000종 이상의 항생제가 미생물에서 얻어지고 있다. 동양 전통의약품의 경우에도 5,100여종의 동식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물다양성의 가치는 특히 농업부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품종 개량자나 농부들은 오래 전부터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 유전적으로 뚜렷한 몇몇 품종을 교배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늘리고, 변화하는 환경조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유전적 다양성을 이용해 왔다. 또한 생물다양성은 환경오염물질을 흡수하여 대기와 물을 정화시키고 토양의 비옥도와 적절한 기후조건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0) 함광복, 『비무장지대는 국경이 아니다』 (서울: 문학동네, 1995), p. 51.

상징하여 남북한의 대외 경제신인도와 안정성을 크게 제고시킬 것이다. 특히 유엔기구의 소재지가 남북간의 교통망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임을 고려할 때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물론,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상승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기폭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동북아의 경제거점,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세계경제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으로서 육상 실크로드의 종착점이던 한반도는 대륙과의 교통이 비무장지대에서 철저히 단절되면서 대륙과 연결된 땅이라는 의미에서의 반도(半島)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물리적으로는 연결되었으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완전히 차단된 곳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문화교섭 사상 19세기 후반에 서구의 해양세력과 아시아 대륙의 문명이 만나는 곳으로 새로이 자리매겨졌던 한반도의 성격을 반세기 이상이나 왜곡시키고 중단시켰다. 즉 비무장지대의 설정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반도로서의 장소적 이점을 마음껏 발휘하여 소위 아시아 대륙문명과 서구 해양문명이 만나고 어우러져 새로운 제3의 문명이 꽃피는 곳이 되기는 커녕 섬보다도 오히려 대륙에서 더욱 철저히 단절되고 말았다.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경제전쟁이라고 불리우는 무한경쟁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동북아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의 생존전략은 한반도라는 지경학적(geo-economic)인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동북아 교류의 중심국가로 되는 것이다. 하늘과 바다에서 동북아의 관문을 만들어 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의 증진을 통해서 막힌 북쪽길

을 열고, 만주를 통해서 시베리아와 중국 대륙,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대륙의 관문도 개척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명한 것은 비무장지대를 남과 북의 연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며,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그 구체적 실천의 계기가 될 것이다.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미시적으로는 유엔환경기구 소재지의 환경친화적 개발, 주재원과 방문객의 체재와 활동, 소재지에서의 각종 국내·국제행사의 진행 등을 통해 자연스레 남북한의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될 수 있고, 향후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와 남북한의 관광지가 연계되어 “생태관광”(ecotourism)<sup>31)</sup>이 실시될 경우에는 그 이득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유엔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은 국제규범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남북한이 정치적 이유로 협력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엔기구를 통한 협력은 남북이 협력을 제도적으로 추진

31) 생태관광은 기존의 “대중관광”(mass tourism)이 환경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강해지자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관광개발과 생태계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관광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여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생태계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보전적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의 형태로 등장하였다. 생태관광에 대한 정의의 시초는 1965년 Hertzler가 “Links” 잡지에서 관광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비평하는 글을 기고하면서 그 대안으로 생태적 관광(ecological tourism)을 제안하면서 이루어졌다. 현재 쓰여지고 있는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는 1983년 Ceballos-Lascurian에 의해 조어(造語)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생태관광은 “상대적으로 간섭을 덜 받은 자연지역에 대한 환경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여행과 자연의 감상과 이에 수반되는 현재와 과거의 문화유산에 대한 감상을 통하여 보전을 증대시키며 여행자에 의한 지역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과 더불어 지역주민에게 금전적으로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광”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생태관광회(Ecotourism Society)는 “환경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지속하는 자연지역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여행”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생태관광은 “자연자원을 기초로 한 관광으로서 자연환경교육과 자연해설을 포함하고, 관광자원을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며 지역사회에 관광이익이 환원되도록 하는 관광”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생태관광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는 자연환경, 생태적·문화적 지속가능성, 교육과 자연해설, 지역사회의 이익도모 등이다. 통일원,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 기초조사 연구』, pp. 433~434 참조.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즉 유엔기구가 남북협력의 제도적인 틀이 되는 것이다. 유엔기구가 남북협력을 제도화하고 협력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이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로 활성화될 것이다.

#### 마. 문화적 측면

환경보호를 중심 임무로 활동할 유엔환경기구의 모든 활동이 문화유물·유적의 보존·관리적으로 진행될 것은 자명하여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는 물론 비무장지대 전역의 문화유물·유적의 보존·관리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가 다양한 국내·국제문화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될 경우, 남북한 전통문화의 보존·발전은 물론 세계적 문화거점으로 활용되어 문화 한반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문화활동이 경제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북한에도 이득이 될 것이다.<sup>32)</sup>

그러나 무엇보다 소재지에서의 문화활동은 분단 반세기 동안 이질화되고 있는 남북한의 문화를 동질화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통일이란 장기적 과정에서 두체제의 문화가 조화, 발전적 화합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험대가 마련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향후 한민족이 추구해야 할 통일문화의 방향성과 내용을 실천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재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에서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32) 남북한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적 동기부여에 관하여는 손기웅 외,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족통일 대구상」(서울: 두리, 2000), pp. 358~375 참조.

## 2. 국제적 차원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될 수 있다. 첫째, 중무장지역인 비무장지대에 평화를 구현하려는 유엔기구가 유치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평화에 기여하여 역내의 예측가능한 질서와 안정적인 국가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는 현상유지에서 조정되고 있다. 무력충돌과 어느 일방만에 의한 통일로 인한 세력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는 유엔기구의 유치, 이로부터 파급되는 남북간의 긴장해소와 관계개선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상반되지 않고 오히려 요망되는 사태가 될 것이다.

또한 주변국의 경우 현 정치·군사적 상황의 변화 없이도 역내 평화가 유엔기구의 유치로 인해 좀 더 담보됨으로써 안정적인 쌍무적, 다면적 관계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경제발전이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며,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어려움을 덜게 될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적 관계 진전은 곧 세계평화에 연결되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국제관계의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후 휴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유엔군사령부의 철수에도 불구하고 유엔기구의 비무장지대내 존재는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하여 주변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좀 더 강하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역내의 안정적 정치·군사적 상황의 발전은 역내 경제교류·협력에도 파급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한, 북한,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은 상호 경제교류와 협력

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 즉 한국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성공적으로 결합될 경우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경제권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내외의 여건 변화는 일본으로부터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망의 확보를 필수적으로 중요하게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한반도의 교통체계중 중심에 위치하는 비무장지대의 이용문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가 남북한간의 교통망연결과 자연스레 연결되고 이를 통해 해양과 대륙의 물류가 왕래하게 될 경우 동북아 경제교류의 활성화와 동북아지역 경제산업체제의 통합에 커다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철로연결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륙철도를 통해서 유럽과 일본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며, 시베리아 가스가 남북한은 물론 일본에도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동북아국가들은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유엔환경기구의 유치가 촉진할 동북아 교통망의 연결은 동북아 경제거점으로서의 한반도 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역내 전반적인 경제관계에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동북아교통운수체계 혁신문제를 구상으로부터 현실로 변하게 하며, 동북아를 다국합작의 총체적 공간으로 형성하고 한반도를 동북아 성장의 거점으로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sup>33)</sup> 나아가 세계 경제교류·협력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동북아는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오랜

33) 김봉덕, “동북아경제권에 있어서의 약간의 문제와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국민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동북아경제협력민간협회, 『제4회 서울 국제심포지엄: 동북아경제협력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1992), p. 274.

세월동안 유지되어 온 자연생태계와 이에 기반한 고유의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물서식공간의 분절 및 훼손은 생물종의 생존과 종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종 폐기물과 유독성물질의 방출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90년대 들어 이러한 문제는 역내 정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각종 대책의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는 현재 동북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보여준다.

<표 2> 동북아의 환경문제

구 분		원 인	영 향	이해관계국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산성비 문제	경제성장에 따른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	· 산림과 토양 파괴 · 동식물 및 인체에 대한 피해	남한, 북한, 중국, 일본
	황사 현상	몽고 및 중국에서 발생한 자연현상	· 중금속 및 각종 미생물의 유입으로 인한 피해	남한, 북한, 중국, 몽고, 일본
해양 및 하천오염		육상오염원 및 유류 오염사고	· 압록강, 두만강 오염 · 황해, 동해 오염	남한,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생태계 문제		동일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동북아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및 자연생태지역 보호문제		동북아 6개국

자료: 곽승준, “남북한 환경협력 및 재원조달방안”, 국회환경경제연구회·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북한 인프라구축을 위한 남북환경·에너지 경험방안』 (2000.11.9), p. 8.

그러나 동북아는 개별국가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국가체제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지구상 어느 지역보다 국가적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고, 또한 환경오염 원인제공국과 피해국간에 불균형이 존재하여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력의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의 악화가 지속될 수 없으며, 지속되어서도 안된다는 사실이다.

유엔환경기구의 비무장지대내 유치는 역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상호 이견을 조정하고 양보와 타협 속에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의제 21”이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별 환경협력을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될 것이다. 각 국가는 유엔환경기구를 통해 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능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환경기구에 이어 환경연구소, 환경정보센터 등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경우 역내 국가는 자국의 환경정책에 중요한 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가적 다양성이 어느 곳보다 심한 동북아지역에서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개별 국가의 정책상 환경문제 개선에 중요성을 강조하는 환기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문제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한편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는 UNEP, UNDP, 국제자연 및 천연자원 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과 같은 환경관련 유엔기구나 국제기구의 커다란 관심사이다. 이미 UNEP는 비무장지대내 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관심을 북한에 전달하였으며, 북한도 이 사업에 대한 검토의사를 밝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UNDP는 비무장지대내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남북한 양자간 사안으로 접근하기 보다

는 범세계적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존 내지 환경보호 문제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UNDP측은 1994년 북경에서 개최된 동북아환경협력회의에서 3개 분야별 협력사업 중의 하나로 채택된 지역차원의 “생물다양성관리계획”(Reg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Programme)내에 두만강지역 생태계 보존사업과 함께 동 사업이 해당됨을 주목하였다. 또한 UNDP는 동 기구가 1994년 5월 제안하고 같은 해 6월 우리 정부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는 20개 남북한협력사업(이른바 한반도 경제기술협력사업)에 생물다양성 지도 및 현황 파악과 비무장지대내의 자연보호구역 지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앞으로 남한과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UNEP와 협력하면서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이 UNEP, UNDP, IUCN 등이 비무장지대내 환경문제와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비무장지대내에 환경과 관련한 사업을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이들 국제기구가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를 예상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이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한 국제기구의 주선이나 중개 등을 활용하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유리하고 따라서 성사가능성은 그 만큼 높아질 것이다.

넷째, 평화와 환경을 위한 지역적·세계적 문화공간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로 조성되어 역내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고, 조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가 다양한 환경교육과 체험의 공간, 평화를 체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면 역내 청소년, 국민들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칠 문화공간이 될 것이다.

## IV.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의 추진방안

### 1. 사업추진구도

그러면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선 전반적인 사업의 추진구도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국내적·국제적·남북관계적 차원이란 중층적 관점에서 상정할 수 있다. 이때 각 단계는 단순히 시간적인 축차적 개념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되는 전체의 과정 가운데 시간별 중점분야를 의미한다.

#### 가. 제1단계: 국내적 준비단계

먼저 한반도 화해·협력을 심화시키고 동시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평화공존의 관계로 진입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서의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방안”에 대한 전략적 타당성을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검토할 (가칭)「유엔기구유치기획단」을 관련 정부부처 및 소수의 전문가로 비공식적 차원에서 구성한다. 이때 이 사업이 비무장지대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협의해야 할 상대가 북한군임을 고려하여 국방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유엔기구유치기획단」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을 민·관·군 등 전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전담할 대통령직속기관 형식의 (가칭)「유엔기구유치위원회」를 국내외 인사로 구성하여 공식적으로 출범시킨다. 이 단계에서 「유엔

기구유치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이론적 측면에서 ①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가 남북한의 포괄적인 국가이익에 부합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임을 이론적으로 설득력있게 완결하며, ②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정치·군사·환경·경제·문화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확정하고, ③ 현재 환경과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유엔(전문)기구를 분석하여 비무장지대에 유치할 유엔환경기구를 확정하는 것 등이다.

#### 나. 제2단계: 국내외 공감대 형성단계

「유엔기구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에 대한 합의기반을 대내외적 차원에서 형성·확산시킨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이 사업의 의의를 국민들에 납득시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규정 정비, 물질적 기반 확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세계 주요 평화 및 환경관련 NGOs에 평화와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의 의의를 홍보하여 국제적 지지여론을 형성하고 이들이 지지성명을 발표하도록 한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북한이 이 사업의 의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 다. 제3단계: 전방위 외교단계

국내적 차원에서는 사업에 대한 국내적 지지를 확고하게 다지며,



제도적, 물질적 기반을 완비한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민·관·군이 협심하여 전방위 차원에서 주변국을 포함하는 유엔회원국의 민·관·군에, 그리고 유엔사무국, 각종 유엔기구, 기타 국제기구·단체 등에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의 의의를 홍보하고 이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다. 만약 북한이 이 사업에 호응할 경우에는 남북한이 함께 이러한 노력을 전개한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북한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에 소극적일 경우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지속함과 더불어, 사업에 대한 국내외 NGOs 및 유엔과 국제사회·기구의 지지를 북한이 사업에 호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한다. 북한이 이 사업에 적극적일 경우 남북회담을 통해 사업의 이행을 위한 (가칭)「유엔기구유치남북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한다. 「유엔기구유치남북위원회」의 구성에는 남북의 군을 포함하는 관련 정부부처가 참여하도록 한다.

#### 라. 제4단계: 실천단계

국내적, 국제적 공감대와 지지, 그리고 북한의 호응을 바탕으로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의 세부실천방안을 남북한 및 유엔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에서 협의하고 실행한다.

## 2. 국내적 추진방안

### 가. 「유엔기구유치위원회」 구성

비공식적으로 구성된 (가칭)「유엔기구유치기획단」이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에 대한 국가전략적 검토를 행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질 경우에 이 사업을 전담·총괄할 (가칭)「유엔기구유치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되,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될 위상을 고려하여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한다. “반민·반관” 형식으로 하여 정계, 관계, 재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기타 민간 사회단체 등을 망라한 사회지도적 인사 및 전문가로 구성하며, 주요 해외인사 및 단체, 국제기구도 참여하도록 한다.

「유엔기구유치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있다. 구체적 주요 기능은 사업과 관련하여 ① 이론적 체계화, ② 국내외 공감대 확산, ③ 민·관·군간 협의·정보교류, ④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국방 및 외교정책 반영, ⑤ 모든 활동의 질서있는 추진, ⑥ 국제적 연대활동 추진 등이다.

「유엔기구유치위원회」는 총회, 이사회, 임원, 실무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에 뜻을 같이하는 정계, 관계, 재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기타 민간 사회단체 등을 망라한 다수의 국내외 사회지도적 인사 및 전문가로 구성하며, 그 중에서 대표적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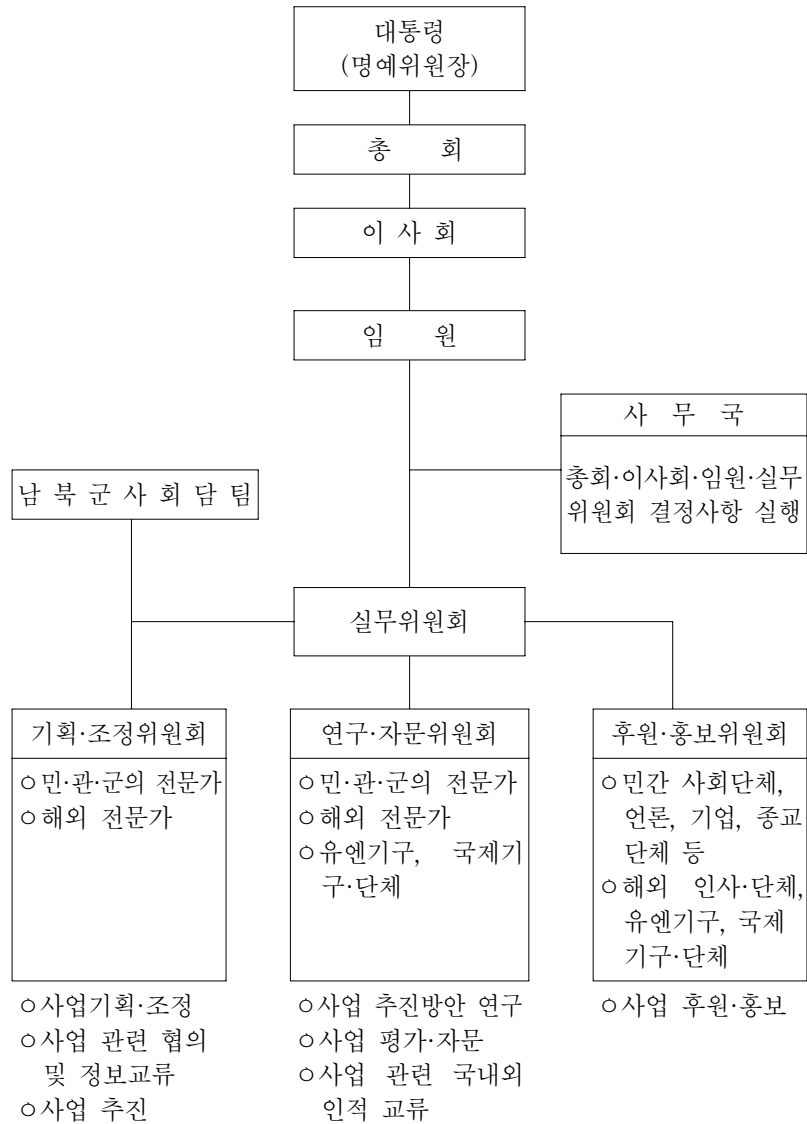
임원으로서는 대통령을 명예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그외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실무위원장, 사무국장을 둔다. 한편 유엔환경기구의 유치사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할 실무위원회를 두되, 기능별로 기획·조정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후원·홍보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게 한다.

이때 사업을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평가·자문할 연구·자문위원회는 「유엔기구유치기획단」을 확대·개편하여 구성하며, 이로써 「유엔

기구유치기획단」은 발전적으로 해체된다.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북한군과 실무적 협상을 담당할 남북군사회담 팀은 「유엔기구유치위원회」, 특히 실무위원회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사무국은 총회, 이사회, 임원 및 실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행정인력으로 구성한다. 「유엔기구유치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정은 참여 회원의 회비, 기부금, 정부의 특별회계·관련 기금·보조금, 국제적 지원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한편 「유엔기구유치위원회」의 출범을 전후하여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관련 (국제)심포지움·회의를 개최하여 「유엔기구유치위원회」의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림 2>는 유엔기구유치위원회의 기구도표(안)을 보여준다.

<그림 2> 「유엔기구유치위원회」 기구도표(안)



## 나. 유엔환경기구 확정

비무장지대에 어떠한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할 것인가에 관한 국내적 논의는 「유엔기구유치기획단」의 검토를 거쳐 「유엔기구유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다섯가지 방안을 고려하여 그중 가장 적합한 유엔환경기구 유치방안을 국내적 입장으로 확정한다.

첫째, 기존의 환경관련 유엔기구중 그 상설사무소의 소재지를 비무장지대에 이전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그러나 기존 사무소와 그 소재지의 이해관계, 업무의 연속성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그 현실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나 다음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엔사무국의 “정책조정 및 지속개발국”(DPCSD)이 상설사무소 역할을 맡고, 53개 위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COSOC의 산하기구로 활동하고 있는 지속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의 상설사무소를 비무장지대에 유치하는 방안이다. CSD는 각국 정부, 민간업계, NGOs 등에 의한 “의제 21”의 이행상황의 평가를 위해 지구정상회의의 요청에 따라 유엔총회가 설립하였다. CSD와 산하 실무그룹이 담당하는 주요사항은 개도국에 대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방법과 이들 개도국이 “의제 21”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문제이다. 중요한 재정체계의 하나는 GEF이다. UNDP가 주도하는 “능력 21”(Capacity 21)사업을 통해서도 기금제공이 가능한데 이 사업은 개도국들이 “의제 21”이 요구하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과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제 21”이란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최초의 국제환경회의인 “인간환경회의”의 20주년을 기념하여 1992년 개최된 “환경과 개발

에 관한 유엔회의”(UNCED), 이른바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sup>34)</sup>을 위한 분야별 행동강령이다. 의제 21은 크게 4개의 부분, 즉 사회경제부문, 자원보존 및 관리부문, 주요 부분의 행위자 부문, 이행수단 부문으로 구성된다. “의제 21”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로만 끝나는 행동강령이 아니고, 1992년 이후 전세계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및 회의의 기본문서로 활용되며, 활동기반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 실례로 현재 활발히 진행중인 여성관련 계획과 회의들, 또한 아동에 대한 보호

34) “지속가능한 개발”로 통용되고 있는 이 용어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개념화하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개발로 번역할 경우 경제와 환경을 통합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제시하기보다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위주의 개발에 중심을 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개념을 정립한 Brundtland 보고서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함이 없이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to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으로 정의된다. The Brundtland Commission, *Our Common Future,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 43.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을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자리잡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리우 회의를 계기로 UN산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가 설치되고 이 위원회가 각 국가에 국가보고서의 제출을 촉구함에 따라 각국은 “국가지속발전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NCS)를 구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지속발전위원회는 서로 대립되는 단체의 기득권과 대응하여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국가지속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목표가 국가의 모든 정책결정에 통합되는지를 확인하는 조직으로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에 대한 자문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창우, “국가지속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안”, 녹색연합, 『우리나라 지속가능한 개발 국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정책토론회』, (1999) 참조. 최근 눈에 띄는 움직임은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시각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환경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환경문제와 사회문제의 통합적 해결을 위한 사회발전전략으로 바라보고 삶의 질의 향상이나 한 단계 향상된 복지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경제사회정책과 환경정책이 통합되어 가는 추세이고, 정책의 꾸준한 이행을 위해 지표를 개발하여 실제 정책의 진행정도 및 효과를 점검해 나가고 있다.

요구 등이 있으며, 이는 “의제 21”의 기본사상과 강령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의제 21”은 지구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류의 모든 해결문제를 포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포괄적인 행동강령이다.

“의제 21”은 각 행위주체의 노력을 강조하고, 특히 제28조에는 “의제 21”의 실천의 중요주체로서 지방자치정부의 노력을 강조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실천에 대한 강조는 그 동안의 환경보호활동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편협한 국가이기주의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환경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의 주민들은 그 지방의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그 지방의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 역시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0년 현재 세계적으로 약 3,500여개 지방자치정부가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250여 지방자치정부 중 170여군데가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그 실행이 더욱 중요할 “의제 21”을 개도국이 실천하는데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CSD를 국가적 다양성이 제일 큰 동북아의 중심지인 비무장지대에 유치하는 방안은 커다란 의미를 가질 것이다. 특히 환경관련 유엔기구들이 각 권한 영역 내에서 “의제 21”의 관련 부문의 이행에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기구의 조직 관리, 역할 조정 및 통합 등의 기능을 비무장지대내 CSD가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는 ECOSOC의 기능 역시 포화상태에 있다는 고려도 함께 작용하였다.<sup>35)</sup>

35) ECOSOC는 경제, 사회분야에 있어서 소위 유엔가족(UN Family)을 구성하는 유엔, 전문기구 및 기타 기구간의 업무조정을 담당하는 주요기관이다. ECOSOC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세계적 차원의 경제 및 사회현안에 대한 토의의 중심무대로서 정책적 권고사항을 유엔회원국 및 유엔체제에 제공한다. 둘째,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및 관련사항에 관한

둘째, 기존 환경관련 유엔기구들의 기능 가운데 일부를 독립하여 하나 혹은 복수의 상설사무소를 비무장지대에 유치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어려우며, 다양하고 과중한 업무로 포화상태에 있는 UNEP의 일부 기능을 비무장지대에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유엔조직의 환경관련 활동을 촉진, 조정, 활성화하기 위해 1972년 설립된 UNEP는 유엔산하기구 본부로는 최초로 제3세계 국가인 케냐 나이로비에 설치되었다. 현재 나이로비 본부에는 2백50여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나이로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멕시코 시티), 서아시아 지역(바레인의 바나마),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방콕), 유럽지역(제네바), 북미 지역(뉴욕)에 지역조직 본부를 두고 있

---

연구 및 보고를 하거나 권고한다. 셋째,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과 준수를 촉진한다. 넷째,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회의를 소집하고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협약안을 작성한다. 다섯째, 전문기구와 유엔과의 관계협정을 교섭한다. 여섯째, 전문기구와의 협의, 전문기구에 대한 권고 및 총회와 회원국에 대한 권고를 통하여 전문기구의 활동을 조정한다. 일곱째, 회원국과 전문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덟째, ECOSOC가 다루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NGOs와 협의를 실시한다. 한편 ECOSOC는 각종 위원회 등 산하 보조기관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며, 보조기관은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ECOSOC에 보고한다. ECOSOC 산하 보조기관은 다음과 같다. 첫째, 9개의 기능위원회이다. 여기에는 통계위원회, 인구 및 개발위원회, 사회개발위원회, 인권위원회, 여성지위위원회, 마약위원회, 범죄예방 및 형사정의위원회, 개발을 위한 과학과 기술위원회, 지속개발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둘째, 5개 지역위원회로서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 사무국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사무국 태국 방콕), 유럽경제위원회(ECE, 사무국 스위스 제네바), 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사무국 칠레 산티아고),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 사무국 요르단 암만) 등이다. 셋째, 4개 상임위원회로서 사업조정위원회, 인간거주위원회, 비정부간기구위원회, 회계 및 보고의 국제기준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실무그룹 등이다. 넷째, 개발계획, 천연자원, 새로운 에너지원 및 개발 등 특정분야에 걸쳐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기구 다수(천연자원위원회, 신규 및 재생가능에너지위원회 등)가 있다. 다섯째, 유엔아동기금,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DP, WFP 및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국제연구훈련기구의 집행이사회, 국제마약통제위원회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



으며 워싱턴 D.C.에는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UNEP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환경업무조정으로 해양, 대기, 식량, 보건 등 주요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 및 국제기구 간 업무를 조정한다. 둘째, 환경평가활동으로 지구환경 모니터링시스템(Global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GEMS)은 전세계 곳곳에 설치된 측정망을 통하여 생태계, 대기, 수질, 기후 등의 제반 환경상태 동향 자료를 수집·전파하며, INFOTERRA(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on the Environment)는 수질, 대기, 화학물질 등 구체적 환경 및 자원 등에 관한 정보전달 중계소의 기능을 하며, IRPTC(International Register for Potential Toxic Chemical)는 국제적으로 사용·교역되는 유동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교환한다. 셋째, 환경관리로서 ① 대기보전과 기후변화 방지와 관련하여 대기 중 SO<sub>2</sub>, 분진 NO<sub>x</sub>, CO 및 CO<sub>2</sub> 등의 배출량과 성층권의 오존층 그리고 오염물의 장거리 이동상황을 집중 감시하고,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지구온난화방지협약을 채택하였다. ② 해양 및 담수 보호와 관련해서는 IMO, FAO, WMO 등과 공동으로 해양오염조사를 위한 공동전문가그룹(GESAMP)을 결성했으며, 1974년 지역해양보존사업을 발족하여 지중해, 대서양, 카리브해, 태평양 등 전세계 14개 해역에서 140여개국에 참여케 하였고, 내수의 환경안전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③ 토양 및 산림보전과 사막화 방지와 관련하여 1984년 세계토양정책을 채택하였으며, 1985년부터 열대림 보전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④ 생태계 및 생물학적 다양성 보존과 관련하여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교역에 관한 협약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협약을 준비하였다. ⑤ 유해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역통제 및 처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sup>36)</sup>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UNEP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화, 활성화될 필요성이 요청되었고, 1997년 7월 10일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유엔개혁에 관한 보고서”(Renewing the United Nations: A Program for Reform)를 통해 이를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촉진은 유엔활동의 중요한 우선순위이며, 이를 위한 UNEP의 활동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UNEP의 기능이 보다 전문화, 활성화될 것과 유엔내 환경관련 활동을 조정, 연계하는 중심점(focal point)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UNEP의 주요기능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직접적인 사업의 이행보다는 감시(monitoring) 및 평가중심의 기능을 강조하고 협약협상 관련사업 등은 UNDP 등으로 이관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sup>37)</sup> 즉 UNEP의 수용 한계성을 고려하여 타 기구에 비해 우월성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의 평가 및 연구, 환경협약과 환경정책 수단의 개발에 관한 조정, 담수자원, 기술이전과 산업 등의 분야에 있어 중점역할을 강조한 것이다.<sup>38)</sup>

따라서 UNEP가 관장하고 있는 일부 기능, 예를 들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교역에 관한 협약의 사무국 기능이나, UNEP가 근래 중점을 두고 있는 환경정보의 평가 및 연구 기능을 나이로비 사무국으로부터 분리하여 비무장지대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유엔환경기구를 비무장지대에 설립한다. 예를 들어 유엔 수단노-사헬리안 사무소(UN Sudano-Sahelian Office, UNSO)

36) UNEP는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자문, UNDP는 능력형성분야, UNCTAD는 무역, 기술이전, 그리고 국제재원기구는 재원동원 관련 구체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CSD가 각 기구의 업무를 연계·조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37) 외교통상부, 『지구환경정보』, 제20호(1997.12); 유엔한국협회, 『유엔이란 무엇인가』 (서울: 유엔한국협회, 1996), pp. 179~182 참조.

38) 외교통상부, 『지구환경정보』, 제26호(1998.6) 참조.

를 참고하여 비무장지대, 한반도, 동북아에 적합한 환경보호 관련 분야를 설정한 후 이를 유엔총회에 상정하여 새로운 유엔환경기구를 비무장지대에 설치하는 방안이다.

UNSO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설립되었다. 1960년대 심각한 가뭄이 아프리카 수단노-사헬리안 지역 서부에서 계속 일어났고 다시 70년대 초와 80년대에 반복 발생하였다. 가뭄은 야채종자 고갈, 토양훼손, 그리고 중대한 가축손실과 거듭되는 농작물 피해 등으로 생활양식과 피와 같은 재난을 초래하였다. 서아프리카의 피해국들은 식량자급자족을 이룩하고 미래의 가뭄피해를 완화하여 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UNSO를 설립하였다. 사막화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은 1977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사막화회의에서 채택되었다. 1978년에는 UNSO가 UNEP를 대신하여 행동계획의 이행에 관해 각국을 지원하는 책임을 부여받았고, UNDP와 UNEP간에 공동사업협정이 서명되었다.

이후 UNSO는 지역국가 토지자원을 관리·보호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가뭄의 피해와 사막화를 통제하는데 집중하였다. UNSO는 특히 아프리카에서 심각한 가뭄과 사막화를 겪고 있는 국가들내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협정 협상과정을 준비하는데 아프리카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UNSO의 활동은 농업삼림, 모래언덕 설치와 같은 현장사업으로부터 토지관리, 참여방안, 환경정보체계 개발, 모든 관계자들을 연결하는 전략체계 구성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UNEP의 후원 아래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상설사무국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의 상설사무국을 비무장지대에 유치하는 방안<sup>39)</sup>, 그리고 역시 상설사무국의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39) 한국 정부의 주관으로 1999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동북아 환경협력 전문 회의에서 한, 중, 일, 러 및 UNEP의 대표들은 동북아지역 환경협력체의

동북아환경협력 고위급회의(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NEASPEC)의 상설사무국을 비무장지대에 유치하는 방안<sup>40)</sup>도 고려될 수 있다.

넷째, 유엔관련 환경협약들 가운데 하나 혹은 복수의 상설사무소를 비무장지대에 유치한다.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각국의 환경정책 및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대기, 수질, 폐기물 및 자연환경 분야에서 210여개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생물다양성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 등 40개의 환경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이 방안은 그 중에서 비무장지대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환경현황과 가장 부합한, 예를 들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거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역내 대기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엔의 틀 내에서

---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점검하고 동 환경협력체간의 시너지(synergy) 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특히 NEASPEC와 NOWPAP간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회의에서 이들 대표들은 NOWPAP의 상설사무국을 2000년 말까지 설치하기로 한 제4차 정부간회의(1999.4, 북경) 결과를 재확인하였으며, 사무국 소재지 선정방법과 관련하여 투표로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UNEP에서 범률적인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40) 1999년 2월 일본 고베에서 개최된 제5차 동북아환경협력 고위급회의는 제4차 회의(1998.1, 모스크바)에서 결정된 4개의 제2단계 NEASPEC 사업의 시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동북아 환경협력체제의 기틀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NEASPEC의 제도화를 위한 재원조달 문제 및 사무국 설치 문제가 동 회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은 NEASPEC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재정문제의 조기 해결 및 사무국 설치 등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체결된 관련 협약(들)의 상설사무소를 비무장지대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다섯째, 환경관련 유엔기구의 상설 회의소를 비무장지대에 유치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는 유엔기구를 유치하기가 어려울 경우, 혹은 유치된 유엔환경기구와는 별개로 비무장지대내에 상설 회의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 환경과 관련된 유엔기구 및 협약 혹은 기타 국제기구의 회의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통상 지구정상회의라고 불리며 1989년 12월 유엔총회에서 개최가 결정되고,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래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유엔환경과 개발회의(UNCED)의 상설개최지로 비무장지대를 활용하는 것이다.

#### 다. 유엔환경기구 소재지 확정

비무장지대의 어느 곳에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할 것인가에 관한 국내적 논의 역시 「유엔기구유치기획단」의 검토를 거쳐 「유엔기구유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한다.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는 세계 여러나라의 시민들이 자유로이 만나는 평화의 공간, 화합의 공간, 환경보호를 상징하는 생태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향후 남북한간 인적, 물적 교류의 촉매 장소이면서 통일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소재지 선정의 기준으로는 ① 유엔기구의 소재지에 걸맞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염원을 상징할 수 있는 지역성, ② 환경관련 국제기구의 소재지에 걸맞는 주변의 자연환경, ③ 배후 도시로부터의 접근성, ④ 기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활용성, ⑤ 한반도 공간구조를 회복하는 남북연결의 용이성, ⑥ 향후 남북 경제·사회·문화분야 교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입지성, ⑦ 향후 동북아 거점으로 역할할 수 있는 입지성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소재지는 초국가적, 탈이데올로기적 행정원리가 적용되며, 노동·상품·자본 및 기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이며, 모든 관세 및 비관세의 무역장벽이 철폐되고 기술적 및 물리적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중립국가적 특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의 대상지역으로 지형의 특성상 서해안 및 서부 평야지대, 중부 구릉지대 및 중서부 산악지대, 동부 산악 및 동해안지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대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의선축상 장단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및 서부평야지대이다. 한강 하구와 임진강 수계지역으로 바로 경기 북부지역인 이 지역의 특징은 파주-문산-개성축, 의정부-동두천-연천축, 양주-포천-철원축으로 이어지는 철도 및 교통망을 이루면서 분단 이전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많이 진행된 지역이다. 파주, 동두천, 포천, 연천 일대는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의 거점인 북방교류거점으로 계획되고 있다. 특히 경의선상의 장단 지역은 평야지대로서 도로, 철도 및 수로를 활용할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일산 및 개성 등 기존 도시와 인접하여 남북 및 국제적 교류, 그리고 배후지원에 유리하다.

이미 한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평화시 건설의 일환으로 장단지구 후방에 통일동산(오두산 일대)의 조성을 완료하였다. 현재 남북한의 합의로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향후 이들이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낳고 있다. 따라서 서울과 평양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국제기구의 소재지로 유리할 수 있다. 한편 서부 평야지대에는 조류와 파충류, 야생 수류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충분한 먹이가 형성되어 있어 철

새 및 텃새 등의 도래지로서 발달되어 있다.

둘째, 경원선축상의 철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부 구릉지대 및 중서부 산악지대이다. 철원-화천-양구로 이어지는 지역으로 과거 철원-김화-평강에 이르는 철의 삼각지대로부터 평강평야, 경원선 철도, 금강산 전철이 지나던 지역이었으며, 현재는 평화의 댐, 용화산, 파로호, 수입천, 금강산의 육로 관문 지역으로 자연경관과 관광부분의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금강산 철도가 재개통되면 금강산개발과 연계할 수 있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서울, 평양 등 기존 도시와 떨어져 있으며, 주변 산악지형의 영향으로 배후도시 건설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지역은 온대성 자연생태계 지역으로 대성산(1175m), 백암산(1179m), 어은산(1277m), 향로봉(1293m)과 같은 높은 산으로 구성되어 야생짐승 서식에 적합하다.

셋째, 동해해안선축을 중심으로 한 동부 산악 및 동해안지대이다. 동해북부철도가 지나던 인제-고성지역은 설악산과 금강산이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자연공원으로서 수려한 산과 해변을 소유하여 관광지로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생태적으로는 남쪽과 연결된 온대중부림과 북쪽과 연결된 온대북부림이 만나는 곳이며, 기후의 특성상 태백산맥 동편의 해안성 기후와 태백산맥 서쪽의 내륙성 기후로 구분된다. 또한 철새 도래지가 산재해 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서울, 평양과 원거리에 있으므로 상호 개방 및 교류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가 비교적 크지 않다.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적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따른 안보상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이미 이 지역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이 실천되고 있어 북한이 비무장지대내 남북 공동사업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 및 국제항의 개발과 배후 도시의 건설, 수도권을 잇는 동서축의 고속교통망 확충 등 운송

네트워크의 형성과 정보통신의 국제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2002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의 실질적인 국제공항화의 여부가 지역내 국제적 사업의 유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재지에 대한 국내적 선정에 앞서서 이들 지역에 대한 생태적, 지리적, 지질적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정소재지 타당성 검사가 민·관의 협조아래 이루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북한이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국내적으로 마련된 소재지선정(안)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그리고 이어서 남북한과 유엔간에 소재지의 최종적 선정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 유치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남한과 유엔간에 소재지선정(안)에 관한 협의를 먼저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대북협상을 전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3. 대북협상방안

#### 가. 협상자세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을 협의할 북한측 주요 상대는 인민군이 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국방부와 남북군사회담팀은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의 검토·기획단계에서부터 북한과의 최종적 합의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한다. 『유엔기구유치기획단』의 검토와 『유엔기구유치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비무장지대에 유치될 유엔환경기구의 성격과 소재지가 확정되면 남북군사회담팀은 이를 근거로 대북협상을 전개한다. 무엇보다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가 남북한 모두에게 정치·군사·환경·경



제·문화 등 복합적 측면에서 상호 이득이 되며, 동시에 국제적으로 남북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족도약의 방안임을 북한이 주지하도록 한다. 물론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가 좁게는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 넓게는 북한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음도 북한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이 충분히 인식하도록 한다.

북한이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에 호응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측에 대해 실질적인 유인동기를 제공하지 않고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척되기 어려울 수 있다.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시 유엔환경기구의 비무장지대내 유치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나아가 에너지난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지원과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을 일괄함의 하는 것도 사업의 현실화를 위해 고려될 수 있다.<sup>41)</sup> 최근 북한이 요구하는 전력의 공급과 유엔환경기구의 유치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의 경제난과 전력난을 고려할 때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에 대한 전력은 남한이 공급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유엔환경기구에 대한 전력공급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북한의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에 대한 호응과 연계하는 것이다.

북한이 유엔환경기구의 비무장지대내 유치사업에 호응할 경우 남북은 「유엔기구유치남북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한다. 국내적으로 합의된 유엔환경기구의 성격과 소재지

41) 북한의 에너지난 개선을 위한 남북협력방안에 관하여는 손기웅, 「북한 환경 개선 지원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참조.

를 북한과 협상해야 하며, 소재지 및 접근로의 환경친화적 개발과 관리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한다.

#### 나. 합의 당사자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에 관한 합의의 당사자가 남한과 북한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이 비무장지대의 출입없이 불가능한 것이며, 비무장지대의 출입은 휴전협정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남방의 경우에는 유엔군사령관의 허가를 요하며, 군사분계선 북방의 경우에는 북한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허가를 요한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합의만으로 휴전협정에 의해 유지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 휴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지 않고 휴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비무장지대 내에서 유엔환경기구의 설치를 위한 지역의 설정과 시설물의 건설을 위한 기본합의의 당사자로는 다음 두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남한과 북한이 두 당사자로 하며, 남한은 유엔군사령관의 허가를 받고 북한은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허가를 받는 방안이다. 둘째, 남한, 북한, 유엔, 중국 등 4당사자로 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안이 첫 번째 방안보다 국제적 보장을 받는다는 이점이 있으나, 비무장지대에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하려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 자체가 유엔기구를 설치하는 국제적 사안임과 동시에 유엔기구의 존재 자체가 평화적 보장을 의미함에 비추어 민족자결주의에 합치되는 첫 번째 방안이 좀 더 타당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의선 철도와 도로 건설의 경우에도 남북한이 먼저 합의하고 여기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남의 건설활동이 유엔

군사령관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sup>42)</sup> 따라서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건설에 관한 합의의 주체적 당사자는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한 협의의 주요창구도 남북군사회담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을 경의선 철도와 도로 건설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군사회담에서 관련 사업으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의 기본당사자는 남북한이지만 사업이 유엔기구의 유치임을 고려할 때 유엔과의 협의도 물론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소재지의 주체를 표준으로 소재지의 성격을 유형화하면 설립주체가 남북한과 유엔이므로 1919년의 베르사이유평화조약에 의하여 주연합국(Principal Allied)과 참가연합국(Associated Powers)의 합의와 국제연합의 보호하에 창설된 단짜히 자유시와 유사하다.<sup>43)</sup>

#### 다. 소재지 및 접근로 개발

유엔환경기구가 유치될 소재지와 접근로가 위치할 비무장지대 및

42) 북한은 경의선 공사와 관련하여 2000년 10월 11일 비무장지대내의 원활한 공사진행과 안전보장을 위해 유엔군사령부에 '공사관련 협상권의 남측위임'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10월 14일 위임서한을 전달하였다. 북한이 다시 '공사완료 이후의 해당지역 관할권도 위임해 달라'고 요구한데 대하여 유엔군사령부는 11월 초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관할권은 기존대로 하되 해당지역의 관리·운영권은 남북한이 갖도록 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여 북측에 전달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남북간 관계개선을 적극 지원하지만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협정 체제를 함부로 허물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3) 임양택, "비무장지대내 경제특구 개발방안", 통일원, 「경제교류·협력분야 '95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 (서울: 통일원, 1995), pp. 10~17 참조.

인접지역은 지난 반세기간 보전된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생태적 자원과 통일 후 여건변화로 인한 개발의 잠재력 모두가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에서는 개발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상충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sup>44)</sup> 즉 유엔환경기구 소재지 및 접근로의 건설은 자연환경의 최적 이용과 관련하여 개발과 보존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입각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유엔기구유치남북위원회」, 산하에 “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여 양국 정부에 상정하는 과정을 밟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국경을 끼고 있는 Erie호수 지역의 수질오염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양국공동위원회(Boundary Waters Treaty of 1909)를 모델로 삼아 남북환경작업반이 공동으로 소재지 및 접근로의 환경조사 및 개발계획안을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한다.<sup>45)</sup> 만약 소재지와 접근로의 건설을 남북한이 각자의 지역에 각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할 경우 환경기준의 차이에 따른 환경불균형으로 인해 갈등이 빚어질 수 있으며, 건설지에서 이동하는 유동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남북이 공동으로 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

44) D. Pearce · A. Markandya · E. B. Barbier, *Blueprint for a Green Economy*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1990); 양현모, “비무장지대의 육역 및 하구 환경의 지속가능한 계획과 관리”, 한국조경학회 · 중앙개발,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환경보전과 개발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1996), pp. 100~101; 권기현, “민통선 지역의 보존·개발 방안”, 강원사회연구회 편, 『분단강원의 이해: 상황과 전망』, p. 469 참조.

45) 차만재, “Environmental Policy Considerations and Peaceful Utilization of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국민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 동북아경제협력민간협회, 『제4회 서울 국제심포지엄: 동북아경제협력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 p. 362.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 개발과 그곳에 이르는 남북 각측으로부터의 통로 개설의 방법은 일체의 군사적, 정치적 문제를 현재의 상태로 존치시킨 가운데 휴전협정 당시에 관문점을 개설하던 방식에 의하여 추진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와 접근로를 제외한 지역의 자국 군사력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남북한 쌍방이 단기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재지와 접근로 등 대상 지역에 한정하는 비무장화 또는 군사적 변동을 상호 합의하에 추진한다. 유엔환경기구의 유치와 활동으로 인해 어느 정도 남북간에 정치적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 군비통제의 차원에서 소재지 및 접근로 인근지역의 비무장화 또는 군사력의 이동배치 등을 추진하는 것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바람직스럽다.

소재지 및 접근로의 개발절차와 방법도 비무장지대 가운데에 놓인 군사분계선의 남북은 각각 그 관할권이 유엔군사령관과 북한군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에게 있으므로 상호 합의만 되면 환경영향평가는 공동으로 하더라도 군사분계선까지의 통로는 남북이 각자 독자적으로 개설하고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에서 이를 공동으로 연결하며 기구의 시설은 공동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한편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는 중·장기적으로 평화시의 일부로 확대될 것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하나, 평화시의 구상이 조만간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또는 평화시 건설 이후에도 평화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도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소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엔환경기구의 유치사업은 이러한 다양한 개발방안을 구상하되 우선적으로 환경과 평화를 위한 국제적 사무 및 회의시설의

건설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건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환경과 평화와 관련하여 국가간 우호와 선린 증진을 위한 세계평화 지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우선적 과제이다. 유엔환경기구의 활동을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고 남북한의 협력에 관한 공감대가 더욱 높아질 경우 동 소재지 혹은 그 인근에 환경과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물의 유치가 논의될 수 있다. 물론 남북한간의 합의가 더욱 이루어진다면 남북 양자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시설물도 유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재지는 장기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교류의 창구, 화합과 협력을 실천하는 문화공간, 세계민족이 교류하는 거점, 세계 젊은이들이 평화와 환경을 생활하면서 배우는 청소년의 공간, 환경보호와 평화를 위한 연구공간, 국제우호와 선린의 증진을 위한 세계평화지역, 환경친화적인 신기술과 정보시스템을 최대로 활용하는 정보화지역, 소재지 및 인근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자원을 보전하고 이를 계획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생태지역, 남북한 화합과 통합에 기여하는 융합의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재지의 선정과 개발과정에서 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이 합동으로 (가칭)“비무장지대 트러스트”(DMZ Trust)<sup>46)</sup>와 같은 별도의

46) 영국의 국민환경신탁운동인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1896년 영국에서 시작된 환경·문화보전운동으로써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환경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땅이나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통해 자연·문화유산지역의 토지·시설을 매입하거나 기증을 받아 영구히 보전하는 운동이다. 보전가치가 있는 사유지를 일반시민들이 출자하거나 소유자들로부터 기증을 받아 공유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운동은 기존의 환경운동과는 달리 보존가치가 있는 개인사유지를 공유화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사유재산권 제약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과 딜레마를 해소하고 환경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지키며 그 혜택을 누리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는 현재 영국의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로 자리잡았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훼손되기 쉬운

기관을 구성하여 소재지 및 접근로의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차원에서, 유치 추진을 위한 국민적 역량 결집을 위해 좀 더 많은 남북한의 주민과 세계시민의 참여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소재지 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협력기금 등과 같은 법적 재원의 확보와 더불어 민통선 및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보전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으로부터의 성금을 통해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물론 유엔기구의 유치사업인 만큼 유엔 및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획득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라. 소재지 및 접근로 관리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남북한에 의한 방안, 유엔평화유지군에 의한 방안, 제3국에 의한 방안,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의한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휴전협정체제가 지속되는 한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입장에서 적대군의 당사자이며, 유엔평화유지군 역시 이러한 고려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북한이 환영할 수 있는

---

아름다운 자연이나 문화자산을 지켜 이를 국민 모두가 즐기면서 후세에까지 전승시키자”는 운동목적에 시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 운동의 보전 대상은 ① 주요 경관지역, ② 문화재(역사적 건물, 성, 정원, 전통적인 산업 시설, 교회, 선사 및 로마시대 유물지역 등), ③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해안 등)으로 나누어진다.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는 현재 약 27만 헥타르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의 사적 토지소유자이다. 또한 경관이 양호하면서 생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해안지역의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내셔널 트러스트가 관리하고 있는 해안선은 565마일에 이른다. 한편 한국에서도 트러스트운동은 1994년 3월 무등산 사유지 공유화기금모금운동을 시작으로 출발하였으며, 대전의 오정골, 태백시 한전 변전소 예정부지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객관적 관리의 주체는 아니다.

또한 남북한이 평화구현의 의지를 표명하는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에 제3국이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안은 남북한의 주체적 평화의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경우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하여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재지의 관리 기능을 수행할 실천력이 있느냐의 의문을 낳게 한다. 이상을 고려한다면 결국 남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는 남북공동관리위원회 방안이 가장 실천성이 있으며,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3의 조정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남북한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에 합의하고 소재지 및 접근로상에 비무장화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검증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경우에는 반드시 외세를 개입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의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성될 경우에는 휴전협정이 존속하는 한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으로 한정하여 구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유치될 유엔환경기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남북공동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출입, 치안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며, 남북한 및 유엔환경기구에 의해 위임된 범위 내에서 독자적 결정권을 가지도록 한다. 소재지에 활동하는 남한의 주민은 소재지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까지 그리고 북한의 주민은 소재지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까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는 남을 통해서 북으로, 북을 통해서 남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관리위원회의 소요경비는 남북한과 유엔환경기구가 분담하되 소재지에서 향후의 경제활동, 예를 들어 생태관광이나 행사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운영경비로 전용하



도록 한다. 한편 유엔환경기구에 이르는 접근로에 대해서는 소재지 이남의 경우에는 남한이, 그리고 소재지 이북의 경우에는 북한이 관리하도록 한다.

#### 4. 국제적 추진방안

유엔환경기구의 비무장지대내 유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의의를 다양한 국제적 통로를 통해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자회담과 그 틀은 한반도 평화조성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4자회담의 양대 의제는 평화체제 전환과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이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구체적으로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상기 양대 의제에 분명하게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다.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남북한간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이란 측면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자회담에서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유엔총회나 안보리, 관련 유엔전문기구 또는 유엔산하기구(UNEP나 UNDP 등)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들 기구에서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를 남북한에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도록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유엔이나 국제기구의 대규모 대북지원시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를 북한에 권고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탈냉전의 시기에 냉전이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이끌고, 지구상의 모든 국가·모든 국민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그 냉전의 중심부인 비무장지대로부터 표현하려는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세계여론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를 위해 평화 및 환경과 직·간접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국외의 NGOs와 국제 민간기구에 대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사업이 정치·군사·환경·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남북간에, 동북아에, 나아가 21세기 신국제질서의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작업에 힘을 쏟아야 함은 당연하다. 이들로부터 자발적인 지지선언이나 지지서명은 사업실현을 위한 분위기 형성과 사업실현에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다.

## V. 결 론

남북관계가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의 교류·협력과 더불어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도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상징되는 남북관계의 발전 전기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마련되었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 역시 정치, 군사, 환경, 경제, 문화 등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 결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북한의 호응 여부가 바로 평화적 공존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느냐에 관한 북한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군비통제 혹은 평화협정체결과 같은 군사적, 정치적 문제가 선행조건으로 해결되어야 비로소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군사적, 정치적 문제는 현 상태로 두되 가능한 부분적, 분야별 평화이용을 실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군사문제와 정치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의 발상은 이러한 접근방법에 기초하였다. 또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 교류지대화, 융합지대화로 단계적으로 진전시킨다는 구도를 상정하되 이를 포괄적, 동시적으로 접근해 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를 제의하였다.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사실상 세계 제1의 중무장지역인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구현을 상징하는 유엔기구를 유치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유지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는 남북한의 의지를 과시하는 사업이다. 유엔기구의 비무장지대내 존재는 휴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시에 예상되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의

경우에도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유지를 담보할 수 있다. 나아가 아시아지역 최초로 유엔기구를 유치함으로써 남북한의 정치·외교적 위상을 고양할 수 있으며,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무장지대 평화적 활용의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경제번영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인류문명 지속의 열쇠로 대두하고 있으며, “21C의 화두”인 환경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남북한의 의지를 과시하고, 환경보호의 중심국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비무장지대의 환경보호·개선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과 민간운동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세계 어느 곳보다 국가적 다양성이 높은 동북아지역에서 환경협력을 이끌어내는 촉매적 역할을 할 수 있어 “의제 21”이 강조하고 있는 지역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고 지구환경협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존재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통일조국의 세계평화유지와 환경보호 활동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협력에서 평화적 공존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남북정상회담이지만, 실질적인 평화적 공존관계로의 진입은 남북대화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남북한의 합의가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가 향후 남북 쌍방에, 남북관계의 진전 구도에, 민족의 장래에 가질 수 있는 의미를 먼저 우리측이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해 북한이 화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대화에서, 특히 직접적으로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남북한 군간의 회담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창

조적 발상의 하나로서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사업”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강영선. 『비무장지대의 천연자원에 관한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72.
- \_\_\_\_\_. 『비무장지대 공동개발을 통한 남북한 상호협조상의 문제점 및 대책』. 서울: 국토통일원, 1973.
- \_\_\_\_\_. 『비무장지대의 천연자원에 관한 공동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73.
- 국방부. 『2000년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0.
- 김정후. 『비무장지대의 공동개발방안』. 서울: 국토통일원, 1973.
- 박치영. 『유엔정치와 한국문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 손기웅.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_\_\_\_\_. 『북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손기웅 외.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족통일 대구상』. 서울: 두리, 2000.
- 외교통상부. 『지구환경정보』. 제20호 1997.12.
- \_\_\_\_\_. 『지구환경정보』. 제26호 1998.6.
- 유엔한국협회. 『유엔이란 무엇인가』. 서울: 유엔한국협회, 1996.
- 제성호.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서울: 서울프레스, 1997.

- 통일원.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 기초조사 연구』. 서울: 통일원, 1997.
- 함광복. 『비무장지대는 국경이 아니다』. 서울: 문학동네, 1995.
- Pearce, D. · A. Markandya · E. B. Barbier, *Blueprint for a Green Economy*.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1990.
- Goodrich, Leland M., *The United Nations in a Changing Worl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 The Brundtland Commission. *Our Common Future,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2. 논문

- 권기현. “민통선 지역의 보존·개발 방안”. 강원사회연구회 편, 『분단 강원의 이해: 상황과 전망』.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 김명기. “비무장지대 평화화의 국제법적 구상”. 김인영 · 김재한 편, 『DMZ: 발전적 이용과 해체』. 서울: 소화, 1999.
- 김봉덕. “동북아경제권에 있어서의 약간의 문제와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국민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 동북아경제협력민간협회, 『제4회 서울 국제심포지엄: 동북아경제협력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 1992.
- 손기웅. “북한 환경문화 연구: 환경정책과 환경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 하(下)』.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_\_\_\_\_. “대북 농업지원 협력 현황과 추진방안”.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

- \_\_\_\_\_. “북한의 환경정책”.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 『환경친화적인 남북경협을 위한 토론회』. 2000.7.14.
- \_\_\_\_\_. “남북환경협력의 의의와 추진 기본방향”. 환경운동연합,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0.7.27.
- \_\_\_\_\_. “한반도 생태계보전과 남북환경포럼의 역할”. 환경운동연합, 『한반도 생태계보전을 위한 남북환경협력방안』. 2000.10.23.
- 양현모. “비무장지대의 육역 및 하구 환경의 지속가능한 계획과 관리”. 한국조경학회·중앙개발,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환경보전과 개발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1996.
- 이장희. “세계화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 기본문제”.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세계화와 통일정책의 당면과제』(제9회 통일문제세미나). 1995.9.20.
- 이창우. “국가지속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안”. 녹색연합, 『우리나라 지속가능한 개발 국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정책토론회』. 1999.
- 임양택. “비무장지대내 경제특구 개발방안”. 통일원, 『경제교류·협력 분야 '95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 서울: 통일원, 1995.
- 조규송.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강원사회연구회 편, 『분단강원의 이해: 상황과 전망』.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 차만재. “Environmental Policy Considerations and Peaceful Utilization of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국민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동북아경제협력민간협회, 『제4회 서울 국제심포지엄: 동북아경제협력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 1992.



### 3. 기타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외무부, 『보도참고자료』

#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방안

인쇄/2000년 12월 28일  
발행/2000년 12월 29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통일연구원장  
편집인/통일정책연구소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3 팩시밀리 901-2544

© 통일연구원, 200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

ISBN 89-8479-027-3

4,000원